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가-31

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Holding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s)

2009.8.31

연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가-31

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Holding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s)

2009.8.31

연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남상열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8.

연구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남상열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여연구원 : 정진하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태은 책임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민정 전문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강신 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요 약 문

1. 제목

o 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 o 한국은 정보통신(IT) 부문 국제적 리더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을 중심으로 IT분야 국제기구 활동 및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음
-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정보통신 분야 국제적 리더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으로 ITU의 이사국 5선을 달성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에서는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
- o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 분야 국제 및 지역기구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o 이에 우리정부는 ITU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및 APT 총회 (General Assembly, GA) 등 정보통신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정보 통신 분야의 발전 및 국제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연계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
- o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등 IT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는,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국 IT산업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 성장, 고용 등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
- o 특히, 2014년 제19차 ITU 전권회의 개최의 경우, 지역 순환개념에 의해 아시아 (Region E)에서 개최될 개연성이 높은 바, 유치 타당성 검토 등 적극추진 필요
- o 한편,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함에 앞서, 본 행사 유치경쟁에 진입하기 위한 당위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

- o 본 과제는 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국내유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ITU 전권회의 등 국제행사 유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ITU 전권회의 및 2011년 APT 총회 유치의 경제·정책·사회문화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행사 및 유사 행사 유치의 당위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o 제19차 ITU 전권회의(2014년) 및 제12차 APT 총회(2011년)의 국내유치 타당성 검토
- 경제적 파급효과
- 국민소득순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 관련 편익 분석
-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 정책적 파급효과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o 종합평가 및 정책적 제언 도출

4. 연구내용 및 결과

□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관

- o ITU는 현존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기구 중 하나로, 정보통신 분야 전반을 다루는 최대 국제기구임
- o ITU 전권회의는 각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로 구성된 ITU 최고위 의사결정기구 로서, 매 4년마다 개최됨
- 향후 4년간의 ITU 전략과 정책, 예산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관리직 및 이사국을 선출
- 총 3주간 행사로, 191개 회원국의 대표단 약 2,000여명 참석

- o AP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전기통신 관련 전문 국제기구임
- 역내 전기통신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간 협약에 의해 1979년 설립
- 현재 32개 회원, 4개 준회원, 119개 협찬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3년마다 총회를 개최, APT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며, 연간 예산과 지출의 한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협정을 체결·개정함
- 총회는 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약 1주일간 개최되며, 32개 회원을 중심으로 15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o 제19차 ITU 전권회의 및 제11차 APT 총회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는 가능한 범위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정책적 파급효과 및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나누어 분석
- o ITU 전권회의와 같은 국제행사의 유치는 성장,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ITU 전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소득순환 측면에서 국외로부터의 주입으로 인한 총 65.9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국외누출(17.8억 원) 대비 약 370%]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IT 산업 홍보를 위한 해외로드쇼와 같은 성격의 연계행사를 국내에서 수 행할 경우, 해외에서 약 55억 원 정도를 투입한 효과 예상
- 전권회의 개최시 외국인 참가자 소비지출 및 선거후보국의 연회개최비용 지출 등으로 고려하여 추산한 결과, 외국인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생산효과는 약 245억 원, 고용효과는 약 363명으로 추산됨
- o APT 총회의 경우, 개최를 통하여 8.8억 원의 생산효과 및 12.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됨
- o 또한,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의 개최는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에도 기여
-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대상국가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 기회 확대 가능
- IT 전시회, 체험서비스, 산업시찰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한국 IT산업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홍보 및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 가능

□ 정책 및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 o ITU 전권회의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정책적 및 사회문화적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여 세계 IT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주도 하고, 한국에 유리한 회의결과 도출 가능
- 그린 IT를 포함한 한국의 IT정책 성과 홍보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해당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제고 및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 결의, 결정과 같은 해당 회의 결과물에 개최지(예: 서울) 명시를 통해 한국의 국제 사회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고
- 전 세계 대표단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인지도를 제고하고, 특히 아프리카 등 지금까지 협력 관계가 취약한 국가와 IT 분야의 국제협력기회 확대
- 전 세계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한류 방송통신 콘텐츠 확산 등

□ 결론

- o ITU 전권회의 등과 같은 성격의 국제행사 개최는 투입되는 비용보다 큰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o 향후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와 유사한 정보통신 분야 국제행사 유치를 결정할 경우, 본 연구내용을 기본자료 및 비교자료로 활용하여 해당 행사의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하에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정책적 활용내용

- o ITU 전권회의, APT 총회 등 정보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주요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종합적 판단 자료로 활용
- o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전략적 함의 제공
- o 향후 본격적으로 ITU 전권회의 유치 경쟁에 들어감에 있어 세부 추진전략 마련 시 기반자료로 활용 가능

6. 기대효과

o 향후 개최될 예정인 제19차 ITU 전권회의, 제12차 APT 총회 등 정보통신 관련 주요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 타당성 여부를 판단에 기여

SUMMARY

1. Title

o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Holding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 o As an global IT leader, Korea has aggressively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entering aroun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 o With the rapidly changing IT landscape,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re called upon to expand their roles in order to raise their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o Thu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advance into a global IT powerhouse by hosting large-scale international IT conferences and forums such as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PP), the APT General Assembly and related events, which will discuss strategies for developing technologies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o Since Asian countries(Region E) are likely to be selected to host the 19th ITU PP in 2014, Korea needs to research the feasibility of hosting the event.
- o In addition, in order to review the justifiability of the bid to hos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policy perspectiv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socioeconomic and cultural effect of the hosting should be carried out.
- 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hosting the ITU PP and

the APT General Assembly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the study on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Korea's holding of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o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hosting the 19th ITU PP(2014) and the 11th APT General Assembly(2011) in Korea
- Economic effects
- · Cost-benefit analysis on circular flow of national income
- Cost-benefit analysis on Korean enterprises' expansion into foreign markets and foreign investment in Korea
- · Analysis on the effect on production, and job creation
- Effect on policymaking
- Sociocultural effects
- o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ovision of policy recommendations

4. Research Results

- o ITU is one of the oldest and largest international bodies in the field of IT.
- o ITU PP is the top policy-making body of the ITU, consisting of minister-level representatives from each member state. Held every four years, the Conference sets the Union's general policies.
 - The Conference adopts four-year strategic and financial plans and elects the Secretary General and member states
- The meeting is held for 3 weeks and attended by about 2,000 delegates from 191 member states
- o APT is a unique focal organization for IT in the Asia Pacific region.
 - General Assembly convenes every three years and sets general policies and principles to achieve its objectives, determines the annual budget and expenditure, and passes or amends necessary treaties.
 - The Assembly is held together with management committee for about one week

and participated by about 150 representatives from 32 member states.

- o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ITU PP are projected to generate economic effects in terms of growth and employment.
- Hosting the ITU PP is expected to generate added values worth 6.59 billion KRW [about 370% of outflow of national income, 1.78 billion KRW] in terms of circular flow of national income.
- Contributions to expansion of IT companies into foreign markets and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Korea: If investment roadshows for promoting Korea's IT industry are held in Korea, their economic effect will be on a par with about 5.5 billion KRW of investment in overseas roadshows.
- Expenditure of foreign visitors is estimated to generate production worth about 24.5 billion KRW and create about 363 jobs.
- Hosting of the APT General Assembly is projected to generate production worth 880 million KRW and create 12.7 jobs.
- o Policy and socioeconomic effects of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ITU PP will also be enormous
- As the chair country, Korea will be able to lead the establishment of global I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courage favorable results for Korea.
- Those event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promote its green IT initiatives and successful IT policies, thereby raising its status as an IT powerhouse.
- Korea will be able to burnish its national im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the name of the hosting city(i.e. Seoul) will be printed on the deliverables(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conference.
- Korea will be recognized as an IT leader by the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 o In conclusion, international events like the ITU PP are projected to generate more policy, economic, and sociocultural benefits than the costs invested.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o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feasibility of hosting important international IT events such as the ITU PP and APT General Assembly.
- o Analysis on socioeconomic effects of large international events will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successful hosting of various global events in the future.

6. Expectations

o The data will help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hosting major international IT events such as the 19th ITU PP and the 12th APT General Assembly.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ITU 전권회의의 개관 ·····	. 3
	제 3 절 APT 총회의 개관 ······	18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접근방법 및 고려사항2	24
	제 1 절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 관련 기초자료 분석	24
	제 2 절 접근방법	30
	제 3 절 고려사항 및 분석의 범위	32
제	3 장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3	35
	제 1 절 ITU 전권회의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	
	1. 예산규모 추정	
	2. 국민소득순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관련 편익분석 4.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분석	
	제 2 절 APT 총회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	50
제	4 장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5	51
	제 1 절 ITU 전권회의 개최의 정책적 타당성	51
	제 2 절 APT 총회 개최의 정책적 타당성	55
제	5 장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의 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 ·· {	56
제	6 장 결론	57
참	고문헌	59
부	.록(31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1
1.1 Background and Objective1
1.2 Overview of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3
1.3 Overview of the APT General Assembly18
Chapter 2. Analysis of Basic Data, Methodology and
Research Issues ·······24
2.1 Analysis of Base Data on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the APT General Assembly24
2.2 Methodology 30
2.3 Consideration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scope of analysis32
Chapter 3. Analysis on Economic Feasibility of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the APT General Assembly35
3.1 Economic feasibility of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35
1. Estimated budget35
2. Cost-benefit analysis on circular flow of national income
3. Cost-benefit analysis on Korean enterprises' expansion into foreign
markets and foreign investment in Korea
4. Analysis on the effects on production, income, and job creation 45
3.2 Economic feasibility of the APT General Assembly50
Chapter 4. Analysis on Policy Feasibility of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the APT General Assembly51
4.1 Policy feasibility of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4.2 Policy feasibility of the APT General Assembly55
Chapter 5. Analysis on Sociocultural Feasibility of the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the APT General Assembly 56
Frempotentiary Conference and the Ar 1 General Assembly50
Chapter 6. Conclusion57
Reference ······59
Annex

표 목 차

[표 1-1] ITU 주요 연혁 ···································
[표 1-2] ITU 조직 구성 및 역할 ······9
[표 1-3] 지역별 ITU 회원국 및 이사국 수 ·······11
[표 1-4] ITU 주요회의 개요 ············12
[표 1-5] ITU 전권회의 구성 ···································
[표 1-6] 역대 ITU 전권회의 개최현황 ·······17
[표 1-7] APT 주요 프로그램21
[표 1-8] APT 총회 개최 현황23
[표 2-1] 역대 ITU 전권회의 참가규모 ······25
[표 2-2] ITU 전권회의 주별 일정 ·······25
[표 2-3] ITU 전권회의 세부일정 ······26
[표 2-4] APT 총회 프로그램28
[표 3-1] 제19차 전권회의 소요 예산안36
[표 3-2] 제19차 전권회의 ITU 관계자 초청 경비 예산안 ·······37
[표 3-3] 제19차 전권회의 참가자 평균 체류일 수 예측38
[표 3-4] 정부회의 참가자 평균 소비 지출액39
[표 3-5] 제19차 전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소비 지출액 규모 추정39
[표 3-6] 제19차 전권회의 선거 후보국의 총 연회비용 추정40
[표 3-7] ITU 선거 후보국수 현황 ···································
[표 3-8] 제17차 전권회의 선거후보국 연회 현황41
[표 3-9] 이사국 선거 후보국(신규후보국) 현황41
[표 3-10] 제19차 전권회의 선거 후보국의 만찬 규모 및 빈도수 예측41
[표 3-11] IT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개요 ····················44
[표 3-12] 외국인 참가자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결과47
[표 3-13] 선거 후보국의 연회비용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결과48
[표 3-14]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49
[표 3-15] 제11차 APT 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50
[표 4-1] 기존 개최국 사례를 통해서 본 ITU 전권회의 정책적 파급효과53

그 림 목 차

[그림	1-1]	ITU 조직도 ······	8
[그림	1-2]	APT 조직도2	0
[그림	2-1]	연구사업 추진체계3	1
[그림	3-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체계도4	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o 정보통신(IT) 부문은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혁신을 위한 기반구조로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o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으로서, IT부문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동력이 되어왔음
 - ※ 2008년 3/4분기 기준 GDP의 17.8%, 수출의 31.6%를 차지(자료: IT통계포탈, '08.12)
 - ※ ITU 디지털 기회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06~'08), ICT개발지수 세계 2위('09) 2008년 OECD 국가 중 광통신망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1위
- o 한국은 IT부문 국제적 리더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을 중심으로 IT분야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음
- 1989년 이후 5회 연속 ITU 이사국으로 활동 중
- 2008년 ITU 분담금을 기존의 5단위에서 10단위로 확대
- ※ 분담금 기준 191개 회원국 중 8위국
-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A),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장단 활동 등 주요 회의 및 그룹의 리더 역할 수행
- ※ ITU 연구반(SG) 및 자문그룹(AG) 의장 2인, 부의장 13인, 지역의장 1인
- o 또한, APEC TEL 장관회의('95), OECD IT 장관회의('08), 방송통신장관회의('05~'09) 등 주요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IT부문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검증받은 바 있음
- o 한편, 최근 국제회의 산업을 포함한 MICE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종 관광 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며, 이에 따른 각국간 유치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 MICE 산업: Meeting(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행사)의 줄인 말로, 국제회의, 포상관광, 국제행사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관광산업을 의미
- 국제회의 산업은 단순히 국제회의만을 육성하기 위한 업종이 아니라, 관광분야는 물론 관련 분야의 모든 업종을 종합화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메커니즘 보유

- 우리정부는 1995년부터 컨벤션산업을 세계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정부는 MICE산업을 17개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변 경쟁국(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의 투자확대, 유치경쟁 심화 등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 ※ 국제비교('08년 기준,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일본 625건, 싱가포르 694건, 한국 316건, 중국 217건
- o 이에 우리정부는 ITU 전권회의, APT 총회 등 정보통신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및 국제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연계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
- o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등 IT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국 IT산업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하며, 성장, 고용 등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
- o 특히, 2014년 제19차 ITU 전권회의 개최의 경우, 지역 순환개념에 의해 아시아 (Region E)에서 개최될 개연성이 높은 바, 적극적인 유치검토 및 추진이 필요
- o 본 과제는 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국내유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ITU 전권회의 등 국제행사 유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ITU 전권회의 및 2011년 APT 총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정책적,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사 및 유사행사 유치의 당위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ITU 전권회의 개관

1. ITU 개관

가. ITU 개요

- o ITU는 국제연합(UN)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정보통신 분야 전반을 다루는 세계 최고, 최대 국제기구
- 1932년에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1865)과 국제전파전신연합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Union, 1906)을 통합하여 설립
- 1942년에 국제연합(UN)에 의해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 국제정보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정보통신 전문기구(Special Agency)로 지정
- o 전기통신의 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모든 인류가 언제 어디서나 전기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 달성을 목표로 함
- 국제 전기통신 및 국가별 통신정책의 조화와 관련하여 회원국 상호간 국제협력· 규제 및 표준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
- o 2009년 8월 현재 191개국의 회원국(member state)이 가입되어 있으며, 분야별 567개의 부문회원(sector members) 및 154개의 준회원(associates)으로 구성되어 있음
- o ITU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대부분을 회원국과 부문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

나. ITU 목적 및 주요활동

□ 목적

- o ITU는 UN의 전문기구이며 전기통신에 관한 최고 국제기구로서 국제전기통신규칙의 제·개정, 국제협력 및 국가간 이해조정,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업무를 수행함
- o ITU의 헌장상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음(ITU 헌장 제1조)
- 전기통신의 발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개도국에 전기통신 기술, 설비, 자원조달 등 지원
- 이용이 용이한 기술설비 개발 및 합리적인 운용 촉진

- 신규 전기통신 기술 보급 확산 촉진
- 평화적 국제관계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폭진
- 국제·지역 정부기구 및 민간기구의 광범위한 협력 도모 등

□ 주요활동

- o ITU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국가간 조화로운 전기통신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ITU 헌장 제2조)
- 국가간 유해한 전파간섭 방지 위해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전파간섭 제거 및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정지궤도위성 등 사용 개선
-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지원, 통신설비/망 구축, 개발 및 개선함에 있어 국제협력과의 연대를 촉진
- 효율적 통신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전기통신요금 설정을 위해 회원국가 협력
- 관련 연구, 규정개발, 결의채택, 권고·의견 작성, 관련 정보 수집·발표 등

다. ITU의 주요 연혁

- o 1865년, 유럽 20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의 유선전신에 관한 국제전신협약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에 서명, 본 협약의 개정을 위한 상설기구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ITU)을 창설함
- o 1906년 독일 베를린에서 해양국가 20개국이 모여 최초의 국제무선전신협약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vention)을 체결하고 국제무선전신연합(International Radiotelegraph Union)을 창설
- o 1924년, 국제전화자문위원회(International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CIF) 설립
- o 1925년, 국제전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 CCIT) 설립
- o 1927년, 국제무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CCIR) 설립

- o 1932년, 유·무선 통합 규정을 세우기 위하여 국제전신협약과 국제무선전신협약을 통합한 국제전기통신협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을 체결 (1934.1.1 발표), 국제전신연합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개칭
- o 1947년, UN (United Nations) 산하 전기통신부문 전문기구로 지정되었으며, 국제 주파수 등록위원회(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IFRB) 및 관리 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설립
- o 1956년, CCIT와 CCIF를 통합하여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CITT) 창설
- o 1971년, 제1차 세계전기통신전시회 및 Forum (TELECOM '71) 개최
- o 1989년 프랑스 니스 전권회의에서 기존의 협약을 헌장(Constitution)과 협약 (Convention)으로 분리
- o 1992년, 추가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개최, 전파, 표준화, 개발 부문으로 조직개편 (CCITT → ITU-T, CCIR → ITU-R)
- o 2009년 현재, 191개 회원국, 650개의 부문회원 및 143개의 준회원이 참가 중

[표 1-1] ITU 주요 연혁

년도	주 요 내 용
1865	O유럽 20개국 파리에서 최초의 유선전신에 관한 국제전신협약(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에 서명(파리)O이 협약의 개정을 위한 상설기구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창설O첫 번째 연합 헌장 채택
1868	o 전신회의(비엔나) 개최 o 연합 본부를 베른(스위스)에 설립
1869	o Telegraph Journal 발간 시작 o Telecommunication Journal(1934) ⇒ ITU News(현재) 로 명칭 변경
1876	o 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 특허
1885	o 제1차 전신회의 개최(베른) o 국제전화서비스 규정

1895	o 최초로 무선전송(Radio-relay)시스템에 의한 신호 송신
1902	o 최초로 음성에 대한 무선전송
1906	o 독일 베를린에서 해양국가 20개국이 모여 최초의 국제무선전신협약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vention) 체결 o 국제무선전신연합(International Radiotelegraph Union) 창설
1920	o 최초 음성 방송(Sound-broadcasting) 탄생
1924~5	o 국제전화자문위원회(International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CIF) 및 국제전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 CCIT) 설립(파리)
1927	o 국제무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CCIR) 설립 ⇒ 전기통신분야의 기술연구, 시험 및 측정을 조정하고 국제표준 작성 총괄
1932	o 국제전신회의 및 국제무선전신회의 동시 개최(마드리드) ⇒ 국제전신협약(1865)과 국제무선전신협약(1906)을 통합한 국제전기 통신협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체결 o 국제전신연합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개칭
1947	o UN 전문기구로 등록 o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IFRB) 설립(애틀란타, 미국)
1948	o ITU 본부 제네바로 이전
1952	o 국제간 기술협력 활동 개시
1956	o CCIF와 CCIT를 통합하여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 CCITT) 설립
1957	o 최초의 인공위성(Sputnik-1) 발사, 우주시대를 맞아 CCIR내에 담당 연구그룹(Study Group) 신설
1963	o 각종 우주통신을 위한 주파수 배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우주 전파통신회의 최초로 개최
1971	o 첫 번째 세계전기통신전시회(World TELECOM) 및 포럼(TELECOM '71) 개최
1973	o 스페인 말라가·토레몰리노스 전권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협약이 채택되어 1975.1.1부터 효력 발생
1983	o UN이 ITU를 선도기관으로 하여 World Communications Year 선포
1985	o 아태지역 전기통신 전시회 개최(Asia TELECOM 85)
1986	o 아프리카지역 전기통신 전시회 개최(Africa TELECOM 86)

1988	o 아메리카지역 전기통신 전시회 개최(America TELECOM 88)
1989	o 프랑스 니스 전권회의에서 기존의 협약을 헌장(Constitution)과 협약 (Convention)으로 분리 o 개발도상국의 기술, 재원지원을 위한 담당부서(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BDT) 신설
1992 (추가전 권회의)	o 개방화, 세계화, 비규제화 등에 따른 전기통신환경 변화 도래 o CCITT와 CCIR을 전파(ITU-R), 표준화(ITU-T), 개발(ITU-D)부문으로 조직 개편 o 3국(전파, 표준, 개발 부문)의 사무총장 자문그룹 신설(TSAG, RAG, TDAG)
1993	o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WTSA)(핀란드 헬싱키)와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Padiccommunication Conference, WRC) 및 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 RA)(제네바) 개최
1994	o 제1차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TDC)(부에노스아이레스)와 제14차 전권회의(교토) 개최
1996	o 제1차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 WTPF) 개최(제네바)
1999	o ITU가 ICANN 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of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창립멤버가 됨
2000	o ITU 135주년, 급변한 정보통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ITU Reform 추진
2003	o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제1차 회의 개최(제네바)
2005	o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제2차 회의 개최(튀니스)

라. 조직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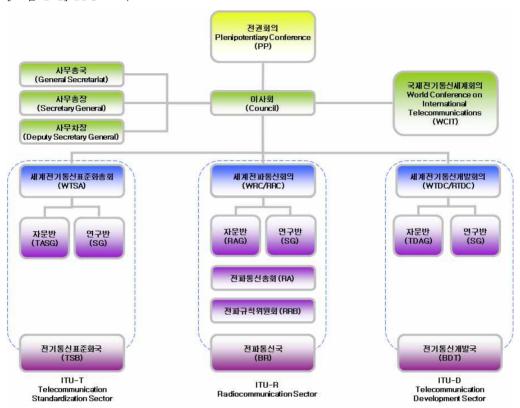
□ ITU 조직

- o ITU는 최고의결기관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집행기구인 이사회 (Council), 세계통신세계회의(World Conferences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WCIT),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 및 3개 부문(전파통신, 전기통신 표준화, 전기통신개발)으로 구성됨(ITU 헌장 제7조)
- 전권회의는 191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로 구성
- 이사회는 46개 이사국으로 구성, 4년에 한번씩 선출되어 전체 회원국을 대신하여

매년 ITU 활동을 감독

- 또한, ITU 내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두고 있음

[그림 1-1] ITU 조직도



- o ITU의 현행 조직은 1992년 제네바 추가전권회의에서 대폭적인 구조개편에 따른 것임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신규서비스의 출현, 통신 분야의 질적 고도화 및 양적팽창, 각종 지역표준화 기구의 난립 및 수적 증가, 개도국의 요청사항 증대 등에 부응 하여 조직개편 수행

※ 1992년 ITU 개편 특징

- 기존 회의 및 상설기관을 그 기능에 따라 통폐합하여 크게 전기통신표준화, 전파 통신, 전기통신 개발의 3개부문으로 재편
- 사무총장 산하에 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WTAC) 신설하고 각 부문에 자문반 (위원회)을 신설/강화함으로써 사무총장의 정책조정기능을 통해 각 부문을 조정
- ITU의 1년 단위 예산체계를 2년 단위의 예산체계로 개편

- o ITU 운영은 사무총국과 전기통신표준화, 전파통신, 전기통신개발 등 3개 부문과 관련 된 3개국(bureau)이 담당
- 사무총국은 인사, 법적문제, 대외관계, 정보서비스 및 회의서비스 제공, 재정문제 등 ITU의 일반적 운영을 담당
- 3개국은 3개 부문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부서의 역할을 담당
- 각 부문은 최상위기구 또는 상위기구를 중심으로 자문그룹(Advisory Group) 및 연구그룹(Study Group)으로 구성됨
- o 내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각국 및 사무총국의 배타적 권한 밖에 있는 행정적, 재정적, 정보시스템 및 기술협력사안들과 대외관계 및 홍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에게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무관리팀의 역할 수행
- 구성: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3개 부문국장

[표 1-2] ITU 조직 구성 및 역할

조직	사무총국	3개국(전파, 표준화, 개발)
책임자	사무총장 및 차장 (선출직)	국장 (선출직)
역할	인사, 법적문제, 대외관계, 정보서비스 및 회의서비스 제공, 재정문제 담당	각 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부서의 역할 담당

□ ITU의 부문

- o 전파통신 부문(Radiocommunication Sector, ITU-R)
- 세계/지역전파통신회의(WRC/RRC), 전파통신총회(RA), 전파규칙위원회(RRB), 전파통신국(BR), 전파통신자문그룹(RAG), 연구그룹(SG)으로 구성
- 전파통신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주파수 할당 및 사용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하며 전파통신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특성과 운영절차에 대한 권고를 개발함
- o 전기통신표준화 부문(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U-T)
- 세계정보통신표준화총회(WTSA), 정보통신표준화국(TSB), 정보통신표준화자문 그룹(TSAG), 연구그룹(SG) 및 산하작업반(WP)으로 구성
- 네트워크의 안정적이며 신속한 전송 보장 및 표준안 마련, 신규 광대역 통신기발 설비체계 선도 등을 담당

- 최근에는 NGN, 정보보안, RFID 등의 분야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그룹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활발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o 정보통신개발 부문(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ITU-D)
- 세계/지역정보통신개발회의(WTDC/RTDC), 정보통신개발국(BDT), 정보통신개발 자문그룹(TDAG), 연구그룹(SG)으로 구성
- 회원국이 요청하는 국가통신문제에 대한 연구 및 대안 검토를 수행하며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정보 수집 및 발간 수행
- 연구그룹을 통해 정보통신개발전략 및 재정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과 공공·민간 부문을 위한 포럼 제공, 개발 및 재정기관들 간 협력· 협조 촉진방안 제안 등 수행

□ 회원국 현황

- o ITU 회원은 회원국, 부문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됨
- 2009년 8월 현재, 회원국은 총 191개국이며, 부문회원은 567개 회원, 준회원은 154개 회원임
-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부문회원' 분류를 신설하고, 소규모 민간회원의 참여 증대를 목표로 '준회원' 제도 신설
- 모든 회원국과 부문회원은 헌장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ITU헌장 제3조)
- o 회원국(member states)
- ITU 회의에 참가하고 이사국(Council)으로 피선될 자격 보유
- ITU 선출직 임원 또는 전파규칙위원회(Radio Regulation Board, RRB) 위원 후보자 지명 권리 보유
- 전권회의, 세계 컨퍼런스, 각 부문총회 및 연구그룹 회의에서 하나의 투표권 보유 ※ 이사국인 경우. 이사회 관련 모든 회의 포함
 - ※ 지역회의의 경우, 해당 지역의 회원국만이 투표권 보유

[표 1-3] 지역별 ITU 회원국 및 이사국 수

지역	회원국	이사국(2006~2010)	
A지역 (미주)	35개국	8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내다, 쿠바,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베네수엘라
B지역 (서유럽)	33개국	8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C지역 (동유럽)	21개국	5개국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D지역 (아프리카)	53개국	13개국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카메론, 이집트, 케냐, 말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튀니지
E지역 (아시아 및 태평양)	49개국	12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총 합	191개국		46개국

자료: ITU 홈페이지

o 부문회원(sector member)

- 통신사업자(Recognized Operating Agency, ROA), 과학 및 사회단체(Scientific and Industrial Organization, SIO), 전기통신 관련기관으로 구성
- 해당 부문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나, 투표권 행사 불가
- 부문총회, 회의 및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RC)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음
- 연구과제 및 권고의 채택과 해당부문 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결정 시 참가할 권리 보유

o 준회원(associate)

- 1998년에는 준회원(associates) 제도가 신설되어 각 부문 연구그룹 중 한 개의 연구그룹 회의에 참여하여 활동 가능
- 전파 부문에는 19개 회원, 표준부문에는 125개 회원, 개발 부문에는 7개 회원이 활동 중
- 관련 문서 액세스 및 Rapporteur로서 활동 가능
- 연구과제나 권고 승인에 대한 투표권 행사 불가

마. 주요 회의

- o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 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회의로 4년마다 개최
- 사무총장, 부총장 각 부문별 국장 선출
- 헌장/협약의 개정 및 주요정책 결정
- o 이사회(Council)
-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이사국(46개국)이 참가하며 매년 1회 개최
- 연간 ITU 사업, 활동 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 o 전파통신(R), 전기통신표준화(T), 전기통신개발(D) 각 부문별로 세계회의, 지역회의, 자문반, 연구반·작업반 회의 개최
- 각 부문별 총회는 3~4년마다 개최

[표 1-4] ITU 주요회의 개요

□ 사무총국

회의	역할 및 기능
전권회의 (PP)	O ITU 헌장 및 협약 제정 및 개정 등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O ITU 4년간의 예산 승인 및 회원 분담금 결정 O 이사회를 구성할 회원국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3개 부문국 국장, 전파규칙위원회의 위원 선출
세계전기통신 회의 (WCIT)	o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 국제전기통신 서비스 및 국제통신 수단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 및 능률적인 운용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 o ITU 회원국, UN 및 UN 산하기구, 지역통신기구, 위성통신기구 등 참여
이사회 (Council)	o 헌장, 협약, 운영규칙, PP, WRC, WCIT, WTSA, WTDC 등에서 규정되거나 결의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검토·조치 o ITU 전략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제반 통신 문제를 검토·심의 o ITU 업무 조정과 사무총국 및 3개 부문 사무총국의 재정 관리

□ ITU-T 분야

회의	역할 및 기능
세계전기통신표	o ITU-T 부문의 기술총회로 각 연구그룹(SG)에서 제출한 보고서
준화 총 회	검토 후 권고안과 연구과제 검토 및 승인

(WTSA)	o 연구그룹의 유지·종료, 신규 조직 필요성 검토 및 결정 o 전기통신자문그룹(TSAG)에 권고안 승인, 연구과제 신설·폐지, 연구그룹 신설·폐지 등에 대한 권한 위임 및 관리
연구그룹 (SG)	O 전기통신기술, 운용 및 요금에 관련된 권고안 개발 O WTSA에서 결정된 절차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후 권고안 개발 O 연구과제의 진척상황과 작성한 신규·개정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및 WTSA 보고

□ ITU-D 분야

회의	역할 및 기능			
세계전기통신	o 연구계획 설정 및 전기통신개발문제 선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개발회의	규정하기 위한 지침 확립			
(WTDC)	o 전기통신개발부문 연구계획의 방향 및 지침 제공			
지역전기통신	O 관련지역의 전기통신에 관한 특정 요청 및 특성에 대해 전기통신			
개발회의	개발국에 자문			
(RTDC)	o 또는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 권고 제출			
전기통신개발 연구그룹 (SGs)	o 개발도상국 통신망의 현대화 정책 및 기술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권고안 마련 o 작업 진행상황과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검토될 신규 및 개정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 준비			

□ ITU-R 분야

=1.01			
회의	역할 및 기능		
세계전파통신 회의 (WRC)	O 전파규칙 개정 O 전파규칙위원회(RRB)와 전파통신국 활동에 관련된 안건 및 활동 검토 O 전파통신부문의 활동에 관한 전파통신국장 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지역전파통신 회의 (RRC)	O 전파규칙위원회와 전파통신국의 해당지역 활동에 관한 지시와 같이 지역적 성격을 띈 특정 전파통신 문제 규정		
전 파통신 총회 (RA)	o ITU-R 부문의 기술총회 o 각 연구그룹(SG) 보고서 검토 후 권고안·연구과제 검토 및 승인 o 연구그룹의 유지·종료, 신규 조직 필요성 검토 및 결정		
전파규칙위원회 (RRB)	o 회원국 요청 하에 전파통신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유해한 전파 혼신에 관한 검토 및 해결방안 권고		
전파통신연구반 (SG)	O 전파통신총회(RA)에서 결정된 절차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및 권고안 개발 O 지상 및 우주전파통신상 무선주파수스펙트럼과 지구정지위성 및 기타 위성의 이용, 전파통신시스템의 특성 및 성능 무선국의 운용 등에 대한 사항 관장		

바. 우리나라의 ITU 활동 현황

- o 가입: 1952. 1. 31(북한은 1975. 9.24 가입)
- o 분담금: 10단위 (2009년 : 318,000 CHF x 10 = 3,180,000 CHF, 약 37억원)
 - ※ 민간(부문)회원: ETRI-KT·삼성전자LG전자LG텔레콤·SK텔레콤·KISA·NIA 등 8개사가 부문회원으로 가입(연간 약 3억원의 분담금 납부)

o 주요사항

- 1989년 이사국으로 피선된 이후 현재 5선 이사국
- 2008년 이사회에서 한국은 분담금 단위를 기존의 5단위에서 10단위로 확대 (2009. 1. 1부터 발효)
 - ※ 분담금 기여수준 기준 191개 회원국 중 8위국(2009년 8월 기준)
-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A),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장단 활동 등 주요 회의 및 그룹의 리더역할 수행
 - ※ ITU 연구반(SG) 및 자문그룹(AG) 의장 2인, 부의장 13인, 지역의장 1인 배출
- o 우리나라 활동직원
- 파견자: 조규조 부이사관(개발국)
- 기타: 최영한(표준화국), 한영국(사무총국), 김동식(전파통신국), 김은주(방콕ITU 지역사무소)

2. ITU 전권회의 기본 개요

가. ITU 전권회의 개요

- o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는 각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로 구성된 ITU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매 4년마다 개최
- ITU의 전략적 방향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규 정책 및 권고를 개발
- 헌장·협약의 개정 및 주요정책 결정
- 향후 4년간의 전략 및 재무계획 채택
- 사무총장, 부총장 각 부문별 국장 등 ITU의 고위관리자 및 이사국 선출
- o 기간: 총 3주
- o 개최국: 직전 전권회의에서 결정
 - ※ 직전 전권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회원국 다수의 동의로 결정
- o 참여대상자: ITU 191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로 구성
- 부문회원 및 준회원은 참관자(observer)로 참여 가능
- ITU 전권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회원국, 참관자 등 일정 참가자격을 갖춘 사전 등록자만이 참여 가능
- 비공개회의 성격상, 참석자 대부분(85%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

□ 전권회의 주요 의제

- o 전권회의는 이사회 보고서를 고려하고, 회원국의 제안에 기반을 두어 다음을 행함 (ITU 헌장 제 8조)
- 일반정책 결정
- 직전 전권회의 이후 ITU 활동, 정책 및 전략계획수립에 관련된 이사회 보고서 검토
- 4개년 예산 승인 및 회원 분담금 결정, 회계검토 및 승인
- 이사국 선출
- 사무총장, 사무차장, 3개국 국장 및 RRB 위원 선출
- ITU 헌장 및 협약 제·개정
- ITU 인사 관련 일반지침 및 기본임금, 기준 임금표와 수당 및 연금 시스템 결정
- ITU와 타 국제기구간의 협약 체결 및 수정
- ITU 총회 및 기타 회의의 일반규칙 채택 및 수정
-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통신관련 이슈

□ 전권회의 구성

- o 전권회의는 크게 본회의(plenary meeting, PL), 6개 분과위원회(committee, C) 및 본회의작업반(working group plenary, WG-PL) 회의로 구성
- 일반적으로 본회의가 단독 진행되거나, 본회의, 분과위원회, 본회의작업반이 2~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동시에 진행
- 모든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표 1-5] ITU 전권회의 구성

명 칭		주 요 안 건
PL	본회의	· 선출직 및 이사국 선거 · 일반의제,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및 의결
C1	운영위원회	· 전권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 제반사항 조정
C2	신임장위원회	· 대표단 신임장 확인 후 결과보고
C3	재정위원회	· 회의비용 및 본회의 결정 이행에 소요될 추정경비 보고
C4	편집위원회	· 최종의정서에 포함될 문서 보완 후 본회의 보고
C5	정책위원회	· ITU 개혁과 정책사안 관련 보고서 및 제안서 검토 · 헌장 및 협약, Rules of Procedure와 기타 선택적 협약 부속서의 개정 검토
C6	관리위원회	· ITU 일반관리에 관한 보고서 및 제안 검토 · 재정정책 및 향후 4년간의 재정계획안 작성 · ITU 활동 관리에 필요한 결정들을 본회의에 권고
WG-PL	본회의 작업반	· 정보격차, 인터넷, 정보사회 등 관련 일반사안에 대한 제안 및 보고 검토

나. 전권회의 개최현황

- o 유럽 내 국제전신망을 구축함에 있어 당면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865년 프랑스 파리(제1차 전권회의)에서 창립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이 오늘날 ITU의 모체임
- 1932년 마드리드 회의(제6차 전권회의)에서 국제전신회의와 국제무선통신회의를 통합하여 오늘날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재탄생 됨

[표 1-6] 역대 ITU 전권회의 개최현황

차수	개 최 년 도	개최지	주요내용
제1차	1865	프랑스 파리	o 국제전신연합 창설
제2차	1868	오스트리아 비엔나	o 연합본부를 베른(스위스)에 설립 결정
제3차	1885	독일 베를린	o 국제전화 관련 최초 규정 제정
제4차	1906	독일 베를린	o 최초 국제무선전신협약 체결
제5차	1927	미국 워싱턴	o 국제무선자문위(CCIR) 설립
제6차	1932	스페인 마드리드	o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개명
제7차	1947	미국 애틀랜틱시티	○ 현재의 ITU기본체제 확립 ○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및 관리이사회 설립
제8차	195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ο 신 국제 주파수 표 결의
제9차	1959	스위스 제네바	o 기술협력활동의 확충을 위하여 연합목적 및 관련기관의 업무 개정
제 10차	1965	스위스 몽트뢰	o 창립 100주년행사 o 주관청회의를 세계, 지역의 2중으로 조정
제11차	1973	스페인 말라가 토레몰리노스	o 국제전기통신 협약 서명('75.1.1발효)
제 12차	1982	케냐 나이로비	o 나이로비 협약 서명('84.1.1발효)
제 13차	1989	프랑스 니스	o 헌장과 협약의 분리 o 고위위원회 조직개편안 작성
추가 전권회의	1992	스위스 제네바	o 조직개편(전파통신, 표준화, 개발부문)
제 14차	1994	일본 교토	o 추가전권회의 개최 근거규정 신설 o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신설 o 민간분야의 ITU활동 참여 확대
제 15차	1998	미국 미네아폴리스	o 연구반 최종결정권한 부여 o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결정
제 16차	2002	모로코 마라케시	o ITU의 개혁 내부역량 강화
제 17차	2006	터키 안턀랴	o ITU의 목적 및 기능 재검토
제 18차	2010	멕시코 베라크루즈(예정)	-

주: 지역별 전권회의 개최국 현황

⁻ 유럽(B 지역) 11회, 미주(A 지역) 5회, 아프리카(D 지역) 2회, 아시아태평양(E 지역) 1회

제3절 APT 총회 개관

1. APT 기본개요

- o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통신업무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의기구로, 설립된 아태지역의 유일한 전기통신관련 전문 국제기구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전기통신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1979년 창설
- o APT는 아태지역내 사회경제개발에 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통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며, 각국 전기통신기관간의 정책, 기술 및 인력에 대한 상호교류를 촉진 및 조정하고자 함
- o 2009년 8월 현재, 총 32개 회원, 4개 준회원 및 119개 협찬회원으로 구성
- o APT 재정은 정규분담금, 특별분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분
 - 2008년 기준, 총 129단위 중 한국(20단위)은 일본(40단위)에 이어 분담금 단위수 기준 2위국이며, 그 뒤를 중국(10단위)이 뒤따르고 있음

□ APT 목적 및 주요활동

- o APT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특히 저개발 지역에서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에 초점을 맞춤
-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역내 주민의 복지를 위한 ICT의 혜택을 극대화
- 전파 및 표준화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이해 분야에서의 역내협력 증진
- 정보통신 인프라 기술 및 정책, 규제에 관한 연구수행
- 역내 정보통신 인프라와 통신서비스의 균형 잡힌 발전기술이전, 인력개발, 정보교류의 증진
- 아태지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및 정보인프라 주요 이슈에 관한 역내 조정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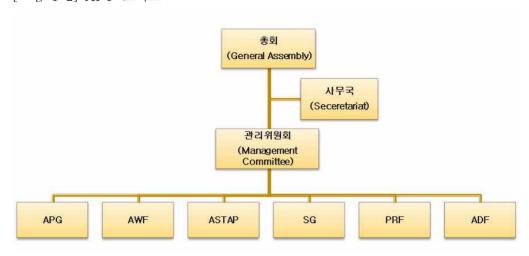
□ APT 주요 연혁

- o 인도네시아에서 이란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15개국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회선망 계획인 아시아전기통신계획이 많은 국가의 관심을 모았고, 이 계획의 촉진이 APT 설립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음
- o 아시아전기통신망 계획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64년 동경에서 개최된 전기 통신전문가 작업단에 시안이 제출되어 찬동을 얻었음
- o 이후, 1968년 방콕에서 개최된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1974.9월 이후 ESCAP으로 명칭변경)의 제1차 전기통신소위원회에서 승인되고, ITU의 기술협력 계획으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재정적 원조에 의해 1970~72년 사이 가능성 조사가 실시되었음
- o 1975년 3월 ESCAP 제31차 총회에서 APT 설립이 결정되었음
- o 1975년 10월 방콕에서 APT 헌장의 기초를 주된 목적으로 한 ESCAP 아시아 전기통신협의체 헌장기초 전문가 회의 개최, 본 회의에서 협의체의 명칭을 APT로 변경
- o 1976년 2월 방콕에서 헌장안 최종 확정
- o 1976년 3월 제32차 ESCAP 총회에서 APT 헌장 채택

□ APT 조직 및 운영체계

- o 최고기구인 총회, 협의체의 관리기능을 지도·감독하는 관리위원회,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총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리위원회 이하 APT 정책규제포럼(PRF), 무선표럼(AWF) 등 작업프로그램 수행

[그림 1-2] APT 조직도



o APT의 총회

- 최고 의결기관
- APT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됨
- 정기 회의는 매 3년마다 개최되고 회원국 2/3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협의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정책 및 원칙을 수립
 - · APT의 목표달성을 위한 일반정책과 원칙의 수립
 - · APT의 연간예산의 기반을 수립하고, 차기 총회까지의 연간지출 상한을 결정
 - ·관리위원회의 APT활동보고를 검토하고, 지침을 제공
 - · APT와 정부, 기관 및 주관청과의 협정의 체결·개정
 - ·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의 선출
 - 회원국의 제안서 검토 및 채택

o 관리이사회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
- 매년 1회(하반기)에 정기 회의를 개최
- 총회가 결정하는 정책과 원칙, 총회가 시달하는 지시를 수행
 - · APT의 행정적 기능을 감독
 - · APT의 행정, 재정 및 기타 활동에 대한 규칙 수립
 - · APT의 작업프로그램의 검토 및 승인
 - · APT의 연간예산 및 추가예산의 검토 및 승인

- · APT계정의 감사 및 승인
- · APT의 연간활동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 · APT사무총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 지시, 감독

o 사무총국

- 기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로 기구 운영 및 각종 사업 수행
-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1인 및 직원 20여명으로 구성

□ APT 주요 프로그램

o APT의 실질적 활동들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의견 조율과 이를 통한 ITU 등 국제기구에의 입장반영 등 아태지역의 공동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1-7] APT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APG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 Conference, WRC)를 위한 아태지역 사전 준비회의
AWF (APT Wireless Forum)	IMT-2000을 포함하는 무선통신 서비스 전반의 이행과 관련한 활동을 담당(한국 주도 설립)
ASTAP (Asia-Pacific Standardization Program)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활동의 조화를 목적으로 세계 표준화 관련 정보의 교환, 국제표준화에서의 아태지역 공동 입장 반영을 위한 활동을 담당
AOF (APT Operators Forum)	아태 지역의 유선통신사업자간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담당(한국 주도 설립)
HRD (APT Human Resource Development)	아태 지역 정보통신 인력의 고도화 교육 프로그램
PRF (Policy and Regulation Forum)	지역내 규제기관간 정책 및 규제 전반 사항에 대한 논의
SG (APT Study Group)	APT의 주요 활동으로 APT 회원의 정보통신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
APTYPS (APT Professionals and Students)	아태지역 정보통신 분야의 젊은 전문가와 학생을 대상 으로 전문성의 향상과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

□ APT 회원 현황

- o 정회원(membership),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 및 협찬회원(affiliate membership)으로 구성
- 2009년 현재, 총 34개 회원, 4개 준회원, 119개 협찬회원으로 구성
- 회원: UN ESCAP 회원국 중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
- 준회원: UN ESCAP 준회원국 중 모든 국가 및 지역 참여 가능
- 협찬회원: 전기통신관련 모든 기업, 기관, 협회 등 참여 가능
- □ 우리나라의 APT 활동 현황
- o 가입: 1979년 7월 (창립회원) ※ 북한은 1994년 4월 가입
 - ETRI, RAPA, KT, 퀄컴 코리아, 삼성전자, SKT 등은 협찬회원로 활동 중
- o 분담금: 20단위 ('09년: 8,346 USD x 20 = 166,920 USD, 약 2억 원)

o 주요사항

- 분담금 기여수준 기준 32개 회원국 중 2위국(2009년 8월 기준)
- 1998년부터 매년 특별분담금으로 20만달러를 납부하면서, APT 개도국 정보통신 인력 초청연구사업 등을 실시하였음
- APT 사무총장, APT 관리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APT 연구반회의 부의장 및 간사, 표준화회의 부의장 등 수행
- 총회(1회), 관리위원회(2회), ASTAP, AWF, ACF, APG 등 개최

2. APT 총회 기본개요

- o APT 총회는 APT 최고기관으로 매 3년마다 개최
 - 총회 개최 시 행사기간 1주일 동안 약 150개국에서 150여명 참여
 - ※ APT 총회 일정은 3일이나, 관리위원회(4일 개최)와 연계하여 약 1주일간 국제회의가 개최됨
 - 최근 총회인 제11차 APT 총회는 2008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 주요 의제

- o APT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정책 및 원칙 수립
- o 연간 예산의 기반을 수립하고 차기 총회까지의 연간지출 상한 결정
- o 타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정체결 및 개정
- o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 APT 총회 개최현황

- o APT는 1979년 태국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총 11차에 걸쳐 매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왔음
- 한국은 1984년 제3차 총회를 유치, 개최함
- o 제11차 APT총회 주요결과
 - 2009~2011 APT 전략계획 채택
 - 4대 전략방향(체계, 개발, 협력, 효과) 및 10대 주요 활동 분야 도출
 - · 세계적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2009년 분담금 단위액은 동결하고 2009년 제33차 관리위원회에서 2010~2011 단위액 증액을 검토
 - APT 사무총장 및 차장 선거
 - · 사무총장 : Mr. Toshiyuki Yamada(일본)
 - · 사무차장 : Mr. Kraisorn Pornsutee(태국)

[표 1-8] APT 총회 개최 현황

차수	년도	장소	차수	년도	장소
창립총회	1979	태국	7차	1996	말레이시아
2차	1981	태국	8차	1999	이란
3차	1984	한국	9차	2002	인도
4차	1987	호주	10차	2005	파키스탄
5차	1990	중국	11차	2008	말레이시아
6차	1993	인도네시아	12차	2011	미정

제2장 기초자료 분석, 접근방법 및 고려사항

제1절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 관련 기초자료 분석

1. ITU 전권회의 기초자료 분석

o 개최일정: 2014년(총 3주간, 구체일정은 2010년 전권회의에서 결정 예정)

o 개최지 선정

- 개최국은 직전 전권회의에서 결정하며, 만일 직전 전권회의에서 결정이 안될 경우, 이사회에서 회원국 다수의 동의로 결정함(ITU 협약 1조)
- 즉, 2014년 전권회의의 개최지는 2010년 전권회의(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결정될 예정임
- 개최도시의 결정은 추후 ITU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됨
- ※ 2010년 전권회의(멕시코 베라크루즈)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ITU 사무총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최도시를 결정한 바, 우리나라도 유치 확정시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임
 - 1) 중앙정부는 개최후보도시를 ITU에 제안
 - 2) ITU는 도시에 대한 실사 수행. 해당 결과를 개최국에 통보
 - 3) 중앙정부는 ITU 실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최지 결정
 - 4) 이사회에서 전권회의 개최 장소 및 일정 확정 후, ITU 사무총국은 서한을 통하여 ITU 회원국으로부터 동의 수령
 - 5) ITU 사무총국은 전권회의 장소 및 일정이 승인되었음을 고시

o 참가대상 및 규모

- ITU 191개 회원국 대표 약 2,100여 명(내국인: 100여명, 외국인: 2,000여명 예상)
- ITU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 ITU 사무총국 직원, 부문회원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IT기업 및 유관기관 등 참가 예상

[표 2-1] 역대 ITU 전권회의 참가규모

차수	장소	참가자 규모	비고
제 15차	미국	168개국 대표 1,308명 포함,	장관급 67명,
	미네아폴리스	총 2,500여명 참석	차관급 30명
제 16차	모로코	158개국 대표 포함,	장관급 70여 명,
	마라케쉬	총 1,859명 참석	차관급 20여 명
제 17차	터키 안탈랴	166개국 대표 포함, 총 2,110명 참석	장관급 76명, 차관급 43명, 대사급 50명

자료: 각 전권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및 ITU 웹사이트

o 주요의제:

- ITU 집행부 및 이사국 선출
- ITU 헌장 및 협약의 제·개정
- 향후 4년간 ITU 전략 및 재정계획 결정
- 주요 IT관련 정책이슈 논의 및 결정 등

o 회의 프로그램

- ITU 전권회의는 본회의(plenary meeting, PL), 6개 분과위원회(committee, C) 및 본회의작업반(working group plenary, WG-PL) 회의로 구성
- 일반적으로 본회의가 단독 진행되거나, 본회의, 분과위원회, 본회의작업반이 2~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동시에 진행

[표 2-2] ITU 전권회의 주별 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첫째 주	O 수석대표회의 O 개회식 O 본회의,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회의	- 의장선출 - 각국의 정책성명 발표 - 사무총장 선거 - 사무차장 선거
둘째 주	o 본회의,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회의	- 부문국장 선거 -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선거 - 이사국 선거
셋째 주	O 본회의,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회의 O 회의종료 및 헌장협약 추인	- 국가별 분담금 단위 확정발표 - 최종결의안 발표

[표 2-3] ITU 전권회의 세부일정

1주차		1일째	4	29	실 째		3일째			4일제	재		5일째	
09:30	수석	대표	E회의					C3			WG			C5
	개회식		본호	본회의		의	C5	본회의		-PL	본회의		C6	
12:30		" · ·영오												
14:30							C2		C:	5				C5 C6
	ŧ	본회:	의	본호	회의	본회의	C4	C6	C	5	본회의	본회의		WG -PL
17:30 18:30				C	21									
2주차		1일까	4	29	<u> </u> 째		3일째			4일 전	재		5일째	
09:30			MC	본호	회의	C2								\A/C
	C5	C6	WG -PL	C5	C6	WG -PL	C5	C6		본회	의	C5	C6	WG -PL
12:30 14:30		*	······································		:					:				
14.00	C5	C6	WG -PL	C5 C6	WG -PL	C5	C6	WG	C5	C6	WG		본회의	I
17.00	<u>t</u>	로회:	의	본호	티의	0.5	CO	-PL	0.5	CO	-PL	C5	C6	WG -PL
17:30 22:30							C6			C5		\	NG-PI	-
3주차		1일째	대	29	닐째		3일째			4일제	재		5일째	
09:30				본호	회의				문	서 년	배포		이사호 특별세~	
	C5		C6	C5	C6		본회으			본회	의		, 글/៕ 본회으	
12:30													- ·	
14:30		로회:		본호	티의		본회으	l	문	-서 ㅂ	배포		본 회의 ! 서명	
17:30	C5	C6	-PL				본회으	I		본회	의			
22:30	C6		WGPL				•							

자료: 제12차 전권회의 프로그램 참조

주:

· C1 = 운영위원회 · C2 = 신임장위원회 · C3 = 재정위원회 · C4 = 편집위원회 · C5 = 정책위원회 · C6 = 관리위원회 · WG-PL = 본회의 작업반

o 부대행사

- 연회, IT 전시(체험서비스), 관광프로그램, 문화행사, 산업시찰(technical visit), 양자회담, 연계 컨퍼런스 등이 수행됨
- 1) 연회: 공식연회인 환영 리셉션(개최국 주최)과 더불어, 선출직 및 이사국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후보국에서 오찬, 만찬 등 다수의 행사 주최
 - ※ 제17차 전권회의: 총 35개국에서 오찬 및 만찬행사를 개최
- 2) 관광프로그램, 동반자 프로그램(문화행사), IT 산업현장 방문: 개최국의 주요 관광명소 및 문화를 소개하고, 산업시찰, 공장견학 등 개최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방문기회 제공
- 3) IT 전시(체험서비스): 개최국은 회의기간 중 각국 장관 등 주요 참가인사가 첨단 IT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능
- ※ 제16차 전권회의: 전권회의 기간동안 회의장 로비에서 IT전시회를 개최
- 4) 양자 및 다자회의: 전권회의에 참여하는 191개 회원국 중 주요전략국간, 그리고 개최국 산업체와 회원국간 양자 및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외교 기회로 활용
- 5) 유관행사 연계 개최: 방통장관회의, 컨퍼런스, 민간 포럼, 학술회의, 전시회 등 IT 관련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개최국의 IT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당행사에 해외인사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 2008년 'OECD IT 장관회의'
- · 소프트 엑스포 컨퍼런스 2008, Global IPv6 Summit in Korea 2008 등 총 12건의 학술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
- · '월드IT쇼'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해외바이어 대상 총 2억1천8백만 달러의 상담실적 달성

o 관련 ITU 지침

-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ITU의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를 위한 주최국 협정서 모델(Model host-country agreement for conferences and assemblies of the union held away from Geneva)' (이하 'ITU의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개최 지침')
- ITU는 컨퍼런스 및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인프라에 관한 요구사항, 비용분담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
- 제네바 이외의 지역에서 컨퍼런스 및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최정부가 관련 추가지출(출장비, 회의장소, 장비 및 기기 등)을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
- ※ 사무총장 및 차장, 부문국장(3인), 전파규칙위원회 위원(2인) 및 사무총국 직원(최대 300명, 안탈랴 전권회의 시 229명)의 여행경비, 보험료 및 일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포함) 제공

2. APT 총회 기초자료 분석

- o 개최 기간: 2011년 하반기
- 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총 1주일간 개최
- o 참가대상 및 규모: 32개국에서 150여명 참여
- APT 회원국 및 준회원국 대표단, 협찬회원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IT기업 및 유관기관 등 총 150여명의 외국인 참가 예상
- ※ 협찬회원은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 가능

o 주요 의제

- APT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정책 및 원칙 수립
- 연간 예산의 기반을 수립하고 차기 총회까지의 연간지출 상한 결정
- 타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정체결 및 개정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등

[표 2-4] APT 총회 프로그램

	일 시	일 정
	08:30~09:15	등록
	09:30~10:30	Plenary Session 1 : 개막식
	10:30~10:45	Coffee Break
	10:45~12:30	Plenary Session 2: - 의제채택 - 차기총회 회장 1명 및 부회장 2명 선출 선거 - 회원국, 국제 및 지역기구 선언문
1일째	12:30~14:00	Lunch Break
	14:00~15:30	Plenary Session 3 : - 향후 3개년 APT의 전략 계획 검토
	15:30~15:45	Coffee Break
	15:45~17:00	Plenary Session 1 : - APT의 2개년 활동에 관한 관리위원회 보고 검토 - APT회원의 분담금 연체 문제에 대한 검토 - APT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거절차 채택에 대한 검토
2일째	09:00~10:30	Plenary Session 5 :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거

	10:30 ~ 10:45	Coffee Break
	10:45~12:30	Plenary Session 6: - 향후 3개년간의 연간 예산의 근거 검토 및 연간 집행한도의 결정 - APT의 향후 3개년 예산을 위한 회원, 준회원, 협찬회원의 분담금 서약
	12:30~14:00	Lunch Break
	14:00~15:30	Plenary Session 7 : -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 검토 - 총회에 상정된 관리위원회 의제 검토
	15:30~15:45	Coffee Break
	15:45~17:00	Plenary Session 8 : - 제안된 의제 검토 - 차기 총회의 장소 및 일시
	09:00~10:30	Plenary Session 9 : - 계류중인 이슈
	10:30 ~ 10:45	Coffee Break
	10:45~12:30	Plenary Session 10 : - 총회 보고서 검토 (계속)
3일째	12:30~14:00	Lunch Break
	14:00~15:30	Plenary Session 11 : - 총회 보고서 검토 (계속)
	15:30~15:45	Coffee Break
	15:45~17:00	Plenary Session 12: - 총회 보고서 채택 - 총회 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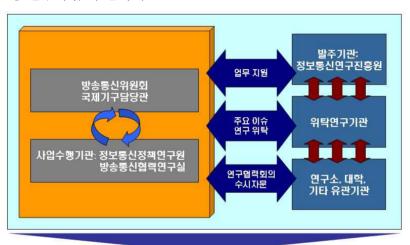
자료: 제11차 APT 총회 프로그램 참조

제2절 접근방법

- o 기초자료 분석 및 접근방법 설정
 - ITU 전권회의, APT 총회 등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기구 행사 관련 문헌 조사 수행
- 국제회의 개최에 있어서의 쟁점사항 도출 및 분석
- 타당성조사의 고려사항 및 경제성 분석 범위 설정
- o 제19차 ITU 전권회의 및 제12차 APT 총회 개최의 경제적, 정책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검토
-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련
- 기초자료, 기존회의 자료,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유치·개최 과정에서 투자 지출(예산) 규모 도출
- ITU 전권회의, APT 총회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 및 편익계산 분석모델 개발
- 국민소득순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비용규모(국외로 누출되는 규모) 추정
 - 편익규모(국외로부터 주입되어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규모) 추정
 -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 관련 편익 분석
-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 2)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 관련
- ITU, APT, 유관 국내 조직 분석, 국제 IT 관련 정책 추세 및 국내 IT산업 역량 파악
-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를 통한 외교적 논의 항목에 있어서 한국 IT 산업의 역할 제고와 국내 IT 산업 정책의 선진화 효과 논의
-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를 통한 해당기구내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국제적 리더십 제고 효과 논의
- 기타 정치·정책적 파급효과 논의
- 3)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기타 효과 분석 관련
-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국가 및 개최지역 브랜드 제고 효과 논의
- 국내 IT 관련 이해당사자의 일체감과 자긍심 제고 효과 논의
- 국제 및 국내 IT 관련 사회문화 트렌드 형성 효과 논의

- 기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논의
- o 종합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도출
-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의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종합한 예비타당성 제시
- 효율·효과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 지원의 적합성 제시 및 기타 향후 유사행사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조언 도출

[그림 2-1] 연구사업 추진체계



국제행사 유치의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분석

제3절 고려사항 및 분석의 범위

1. 고려사항

□ 제19차 ITU 전권회의 및 제11차 APT 총회를 본연구의 분석사례로 선정한 사유

- o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해당 행사의 성격 및 의의, 개최가능성, 정보통신 분야 국제 회의로서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제19차 ITU 전권회의 및 제11차 APT 총회로 선택하였음
- o ITU는 UN산하 전문기구로 전기통신부문 최고·최대 국제기구이며 전권회의는 ITU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 정보통신 분야 대규모 국제회의의 중요한 사례로서 유의미한 분석 가능
- 191개 회원국에서 2,000여명의 외국인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 ITU 전권회의 및 연계행사 개최는 한국 IT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한국 IT산업의 우수성을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국내 IT기업들과 외국 IT 정책입안자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IT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 가능
- o 특히, 제19차 ITU 전권회의의 경우 지역순환개념에 의해 아시아가 해당하는 E 지역에서 개최될 개연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
 -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경우는 일본(1994년, 교토) 1회가 전부
- 2009년 8월 현재 개최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가 없는 바,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추진할 경우, 유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ITU 헌장에서 전권회의의 순환개최를 명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ITU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은 지역 윤번제 (협약 4조)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순환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 2009년 현재, 전권회의 개최국 현황(총 18회 개최)
 - 유럽 (Region B) 11회, 미주(Region A) 4회, 아프리카 (Region D) 2회, 아시아 태평양 (Region E) 1회
 - ※ 1990년 이후 전권회의 개최 현황
 - 1992 제네바 (Region B) 2002 마라케쉬 (Region D)
 - 1994 교토 (Region E) 2006 안턀랴 (Region B)
 - 1998 미네아폴리스 (Region A) 2010 베라크루즈 (Region A 예정)

- o AP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전기통신 관련 전문 국제기구로, 3년마다 총회 개최
-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통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분야 지역기구의 기반을 강화하고, 역내 정보통신 주도국으로 위상을 제고 필요

□ ITU 전권회의 등과 관련 행사의 개최계획 부재

- o 제19차 ITU 전권회의 및 제11차 APT 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개최계획의 부재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 존재
- o 이에, 행사 규모, 소요예산 등의 계량적 도출을 위하여 개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개최계획안을 작성, 이를 바탕으로 해당행사의 개최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음
- 기존 행사 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 해당기관의 행사개최 지침, 유사 행사 사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개최계획안 준비
- 단, 해당 개최계획안은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부차적으로 작성된 비공식적 계획안인 바 추후 변동이 가능하며, 계획 변동에 따른 소정의 예산 변동 또한 가능함
- ※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참석자 규모
- 기존 회의(특히 직전 회의) 참석자 규모를 참조하여 추정
- ※ ITU 전권회의 개최 소요예산
- ITU의 주최국 협정 모델에 의거하여, OECD 방송통신장관회의, 글로벌 방송 통신 컨퍼런스 등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소요예산 항목 중 큰 비중(35%)을 차지하는 ITU 사무총국 초청비용은 향후 ITU와 협의를 통한 감축이 가능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으로 고려
- 회의장 등 관련 예산 산정시 서울 코엑스를 사례로 들어 작성된 바, 향후 개최도시 변경 시, 예산 중 항공료 등 일정항목 변동 가능
- ※ 외국인 지출추정
- 외국인의 지출은 한국관광공사 자료 활용
- ITU의 연회개최 비용은 기존 전권회의 출장보고서를 참조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론

□ ITU 전권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o 경제적 타당성항목은 일반적으로 정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나, ITU 전권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크게 나오기 어려운 한계점 존재

- ITU 전권회의 등 국제기구 총회의 성격을 지닌 회의는 수요(참석자 수) 자체는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행사개최를 통한 정책적, 사회문화적 효과 등 국가의 정책적 기조, 본 행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가질 수 없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분석의 범위

- o 제19차 ITU 전권회의 및 제11차 APT 총회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는 가능한 범위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정책적 효과 및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
- o ITU 전권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용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순환 측면에서의 비용편익분석과 이와 관련한 생산 및 고용부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추산
- o APT 총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참석자 규모, 참석 기간 등을 고려, 가용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 및 고용유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산하였음

제3장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ITU 전권회의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

- 1. 예상규모 추정
- □ 예산안 기본방향
- o ITU 191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로서 상업적 성격보다는 정책적 성격이 강한 바, 전액 국고 지원으로 가정
 - ※ 단, 실제 개최를 추진시, 전권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비용(현물 포함)은 지자체 부담 추진도 가능
- o 회의장 규모 등 ITU 시무총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 'ITU의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개최 지침'을 바탕으로 기본항목 구성
- 2008년 'OECD IT 장관회의'의 예산자료 및 기존 ITU 전권회의의 행사계획, 참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소요예산안(예시)

- o ITU 전권회의 예산안: 약 107억 원(2009년 기준)
 - ※ 유사 국제행사 예산(결과보고서 기준)
 - · 2008 OECD IT 장관회의: 43억 8천만 원(3일/2,300명)
 - · ITU TELECOM ASIA 2004: 57억 원(5일/24,400명)

[표 3-1] 제19차 전권회의 소요 예산안(예시)

(단위: 억 원)

			2009년	편성예산	2014년
	구 년	분	예산액	비율	추정예산
	준비기획단 제반 비용			4.6%	5.75
	사업운	영비	1.36	1.3%	1.58
	용역비	총계	100.89	94.1%	116.92
	1 _1 _1	항공료	17.80	16.6%	20.63
	ITU 관계자 초청경비	일비 및 기타	19.95	18.6%	23.12
		총계	37.75	35.2%	43.75
	회의경	당 임대료	12.14	11.3%	14.07
	연회행사비		5.70	5.3%	6.60
	장비 및 시스템 임차료		15.20	14.2%	17.62
	전산관	련 용역비	1.47	1.4%	1.71
용 역	도서	1인쇄비	1.56	1.5%	1.81
= 비	홍보	홍보 및 광고비		1.4%	1.74
	주문제직	t 및 설치비	1.53	1.4%	1.77
	참가자 배투	보용 물품제작비	0.75	0.7%	0.86
	인건비	등 수수료	4.51	4.2%	5.22
	수송	; 관광비	0.64	0.6%	0.75
	공	항의전	0.01	0.01%	0.01
	운영관리	리 부대비용	0.46	0.4%	0.53
	PCO 비용		17.67	16.5%	20.48
	총	계	107.21	100.0%	124.25

주: 1. 준비기획단 제반 비용은 '11년부터 '14년까지 지출되는 비용임

^{2.} 홍보 및 광고비 또한 회의 개최 전까지 지출되는 비용임

^{3. &#}x27;14년 추정예산은 '99년에서 '08년까지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률 평균(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 활용)이 2.9%, IMF의 2010~2014년 예상 물가상승률이 3%인 점을 참조하여 3% 적용

^{4.} 본 예산안은 서울 COEX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개최지가 변경될 경우 ITU 관계자 초청경비(항공료 및 일비) 등 일부 항목의 예산액 변동이 예상됨

2. 국민소득순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o 제19차 ITU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국민소득순환 측면에서 국외로 누출(leakage)되는 규모와 국외로부터 주입(injection)되어 국민소득증가에 기여하는 부가가치의 규모를 비교하였음

가.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 규모 추정

□ 국외누출(leakage)규모 추정

- o 제19차 전권회의 개최 예산 중 국민소득 순환으로부터 국외로 누출되는 비용은 ITU 관계자 총 초청 경비인 약 37.7억 원 중 일비를 제외한 왕복 항공료 및 보험료로 약 17.8억 원으로 추산됨
- ITU 전차 회의 및 유사 행사(OECD IT 장관회의)를 참고하여 산출
- ITU 관계자 초청경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된 일비 부문은 국내에서 100% 지출 된다고 가정

[표 3-2] 제19차 전권회의 ITU 관계자 초청 경비 예산안

항 목	단 가(원)	흿 수	금 액(원)
가. 왕복항공료			1,779,945,280
1) ITU 선출직 임원	10,810,900	7인	75,676,300
2) ITU 직원	7,400,000	230인	1,702,000,000
3) 보험료	2,268,980	1단위	2,268,980
나. DSA			1,994,760,495
ITU 관계자 총 초청경비			3,774,705,775

- 주: 1. 'ITU의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개최 지침'에 의거하여 선출직 임원들에게는 일등석, ITU 직원에게는 비즈니스석 항공편 제공
 - 2. 항공료 단가: 2009.10.01 출발, 2009.06.18 발행 기준
 - 3. 보험료: PP-06시 ITU 직원들에게 지급된 총 보험료에 2009년 5월 평균 최종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
 - 4. DSA(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일비): 보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나.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편익규모 추정

□ 국외로부터의 주입(injection) 규모 추정

o 제19차 ITU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편익은 앞서 산출한 비용 개념과 상응하도록 국민소득순환 측면에서 국외로부터 주입되는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 규모와 동 회의기간 중 있을 ITU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선출직 후보국들의 연회 개최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에 대해 각각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추산하였음

□ 제19차 전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규모 추정

- o ITU 전권회의의 총 참가자 수는 매회 약 2,000여 명 수준을 보여 왔으며, 제19차 전권 회의 총 참가자 수는 전차 회의 참가자 수(내국인 참가자 포함 총 2,110명이 참석)를 감안하여 약 2,100명으로 추산
- ITU 선출직 임원 및 스텝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 중 전차회의 내국인 참가자 수인 약 300명을 제외한 약 1,800명의 외국인 참가자가 제19차 전권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
- o 단, ITU 선출직 임원 및 스텝의 소비 지출액은 개최 예산에서 집행되므로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규모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제외한 총 1,800명의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서만 소비지출규모 추정
- o 회의 개최일(총 21일) 중 참가자 마다 참석일 수 및 국내 체류일 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 ITU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국내 체류일 수를 [표 3-3]과 같이 도출

[표 3-3] 제19차 전권회의 참가자 평균 체류일 수 예측

평균 체류일 수	구성비(%)	참가자 수(명)
6일	40	720
10일(교체인력 포함)	40	720
21일	20	360
소계	100	1,800

o ITU 전권회의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지출예상액은 한국관광공사와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중 정부회의 참가자의 평균 소비 지출액(평균 체류일 수 6.5일)을 토대로 각 참가자 별 평균 체류일 수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

[표 3-4] 정부회의 참가자 평균 소비 지출액 (2007년 기준)

구분	1인당 평균지출(US\$)	원화 환산(원)	1일당 평균지출(원)	구성비(%)
숙박비	834	1,066,186	164,029	30.11
쇼핑비	489	625,138	96,175	17.65
식음료비	313	400,139	61,560	11.30
현지교통비	138	176,419	27,141	4.98
오락 관련 지출	82	104,829	16,128	2.97
여행사 관련 지출	176	224,998	34,615	6.35
문화 관련 지출	120	153,408	23,601	4.33
운동 관련 지출	93	118,891	18,291	3.36
기타비용	525	671,160	103,255	18.95
소계	2,770	3,541,168	544,795	100.00

주: 1, 1인당 평균 지출액의 원화 환산 시 대미원화 환율은 2009년 7월 기준 1278.4원(매매기준율)을 적용 2, 1인당 평균 지출(원)은 1인당 평균 지출액(환율 적용)을 평균 체류일 수 6.5일로 나누어 계산

o 이를 모두 종합하여 제19차 전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소비 지출액 규모는 [표 3-5]와 같이 총 약 103.9억 원으로 추산

[표 3-5] 제19차 전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소비 지출액 규모 추정

구 분	참가자 1일당 평균지출(원)	6일 체류 참가자 1인당 평균지출(원)	10일 체류 참가자 1인당 평균지출(원)	21일 체류 참가자 1인당 평균지출(원)
숙박비	164,029	984,174	1,640,290	3,444,609
쇼핑비	96,175	577,050	961,750	2,019,675
식음료비	61,560	369,360	615,600	1,292,760
현지교통비	27,141	162,846	271,410	569,961
오락 관련 지출	16,128	96,768	161,280	338,688
여행사 관련 지출	34,615	207,690	346,150	726,915
문화 관련 지출	23,601	141,606	236,010	495,621
운동 관련 지출	18,291	109,746	182,910	384,111
기타비용	103,255	619,530	1,032,550	2,168,355
소 계	544,795	3,268,770	5,447,950	11,440,695
체류기간 별 참가자 수		720(명)	720(명)	360(명)
체류기간 별 소비 지출액		2,353,514,400	3,922,524,000	4,118,650,200
	가자 소비 지출 별 소비 지출 ⁹	10,394,	688,600	

□ 선거 후보국의 연회 개최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 추정

- o 회의 개최기간 중 실시되는 전권회의 선거후보국들의 총 연회비용은 약 14.3억 원 으로 산정
- 선출직 별 후보국 수는 4개 전차회의 후보국 수를 평균하여 추산
- 단, 이사국 선거의 경우 신규 후보국 수가 매회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4개 전차회의의 평균이 아닌 제17차 전권회의의 신규 후보국 수로 설정
- 연회비용은 2008년 'OECD IT 장관회의' 예산 집행 자료의 만찬 관련 항목 및 단가를 반영하여 계산

[표 3-6] 제19차 전권회의 선거 후보국의 총 연회비용 추정

후보국 부문	총 예상 연회비용(원)
사무총장 후보국	541,747,500
사무차장 후보국	146,723,281
부문국장 후보국	349,878,594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 후보국	113,602,500
이사국 신규 후보국	276,117,188
총 비용	1,428,069,063

- 주: 1. 후보국 수: 사무총장(6국), 사무차장(3국), 3개 부문국장(8국), RRB 위원(16국), 신규 이사국(14국)
 - 2. 사무총장, 차장 및 부문국장 후보국 연회: 각 후보국 당 총 3회(전체 회원국 대상 1회, 전략지역 대상 2회)의 연회를 개최한다고 가정
 - 3. RPB 후보국 연회: RPB 출마는 개인적 차원의 성격이 강한 바, 산출된 평균 후보국 수 중 탈락 예상자(10%)를 삭감한 후, 그 중 50%만이 연회를 개최한다고 가정. 각 후보국 당 1회씩(전체 회원국 대상) 개최한다고 가정
 - 4. 이사국 신규 후보국 연회: 전차회의의 사례를 참조하여 각 후보국 당 연회를 1회씩 (50%는 전체 회원국 대상, 50%는 각 회원국의 대표급(HoD) 대상) 개최한다고 가정
 - 0 구체적 추정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7] ITU 선거 후보국수 현황

	후보국수				
후보 부문	제 14차	제 15차	제 16차	제 17차	제 19차 (예상)
사무총장	1	3	1	6	6
사무차장	4	4	2	3	3.25
부문국장	7	9	6	9	7.75
RRB 위원	12	16	19	17	16

[표 3-8] 제17차 전권회의 선거후보국 연회 현황

주최국	일시	선거 출마	규모
요르단 주최 만찬	06.11.07 (첫째 주 화요일)	사무총장	1000명
튀니지 주최 만찬	06.11.08 (첫째 주 수요일)	사무총장	350명
중국 주최 오찬	06.11.10 (첫째 주 금요일)	사무차장	500명
일본 주최 만찬	06.11.09 (첫째 주 수요일)	부문국장	_
우리나라 주최 만찬	06.11.10 (첫째 주 금요일)	부문국장	1000명
러시아 주최 만찬	06.11.07 (첫째 주 화요일)	부문국장	450명
우간다 주최 만찬	06.11.13 (둘째 주 월요일)	부문국장	450명
미국 주최 만찬	06.11.14 (둘째 주 화요일)	RRB	350명
이란 주최 오찬	06.11.07 (첫째 주 화요일)	RRB	200여명
키르키즈스탄 주최 오찬	06.11.09 (첫째 주 목요일)	RRB	-

자료: 2006년 제17차 ITU 전권회의 참가보고서(MIC, 2006) 주: 우리나라가 참가한 만찬 현황만 나온 보수적 수치임

[표 3-9] 이사국 선거 후보국(신규후보국) 현황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총합
14차 신규 후보국	칠레, 바하마	덴마크, 포르투갈,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남아공	베트남	9개국
15차 신규 후보국	산타루치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벨라루스	짐바브웨 가나	피지, 요르단, 스리랑카	9개국
16차 신규 후보국	수리남	노르웨이, 터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모리셔스 보츠와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10개국
17차 신규 후보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브룬디, 가봉, 르완다, 수단, 잠비아	필리핀, UAE, 레바논	14개국

주: 신규 후보국 수는 매 회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으므로 2014년에 개최될 제19차 전권회의 때도 최소 14개의 신규국이 이사국 진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만찬 횟수 측정

[표 3-10] 제19차 전권회의 선거 후보국의 만찬 규모 및 빈도수 예측

후보 부문	만찬 대상	만찬 규모	예상 후보국 (제19차)	총 만찬흿수
ᅬᄆᅕᅐ	전체 회원국	1000명	6	6
사무총장 -	각 지역(A, B, C, D, E)	200명	0	12
시 ㅁ 원자	전체 회원국	500명	3.25	3.25
사무차장 각	각 지역(A, B, C, D, E)	100명	3.23	6.5
 부문국장	ᆸᆷᆿᇌ 전체 회원국 500명 7		7.75	7.75
十正寸で	각 지역(A, B, C, D, E)	100명	7.75	15.5

RRB 위원	전체 회원국	300명	16	7.2
	각 지역(A, B, C, D, E)	60명	10	_
이사국	전체 회원국	500명	1.4	7
	전체 회원국	250명	14	7

- 주: 1. 만찬 규모는 제 17차 전권회의 참가 보고서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2.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만찬 규모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만찬의 1/5 규모로 설정
 - 3. 만찬 횟수는 각각의 후보국이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1회, 전략 지역으로 설정된 두 지역 정도를 대상으로 각각 1회씩 주최할 것으로 설정
 - 4. RRB 위원은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므로 평균 후보국수에서 탈락 예상자 10% 삭감 후 그 중에서 다시 50% 정도만이 연회를 여는 것으로 설정
 - 5. 신규 이사국 후보국들 중 유럽 국가 등 HOD급만 초청해서 만찬을 개최할 국가들도 다수일 것으로 판단되어 총 만찬 횟수 14.4 번에 대해 만찬 규모를 500명과 250명 규모의 50/50으로 나눔
 - 6. RRB 위원 선거 후보국들과 신규 이사국 후보국들은 각 지역 대상 만찬 및 연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 으로 설정

□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편익 규모

- o 제19차 전권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총 소비 지출액 규모 약 103.9억 원에 한국 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로부터 산출한 관광부문의 세부부문별 2005년 부가 가치율(37.4~66.8%)을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 증가 부분을 약 60.6억 원으로 추산
- o 회의 개최기간 중 실시되는 전권회의 선거후보국들의 총 연회비용 약 14.3억 원에 관련 부문(식음료)의 2005년 부가가치율 37.4%를 적용하여 부가가치 증가분을 약 5.3억 원으로 추산
- o 이를 모두 종합하여 추산한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최종 편익은 총 약 65.9억 원으로 추산

다.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o 제19차 ITU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국민소득순환에서의 누출과 주입을 근거로 각각 17.8억 원과 약 65.9억 원으로 추산되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약 370%임

> 총 비용 약 17.8억 원 < 총 편익 약 65.9억 원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비율): 약 370%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관련 편익분석

□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지원 효과

- o ITU 전권회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회의자체가 상업적 함의를 가지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특히 개도국)의 경우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부문인 정보통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연계행사 개최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전세계 191개 회원국 장차관급 및 고위실무자들과 국내기업 간 네트워킹이 가능
 - 전 세계에서 참여함에 따라 선진국, 개도국, 전략적 진출국 및 잠재 시장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 가능
- o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KISA(한국 인터넷진흥원, 구 KIICA)가 수행해온 'IT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대규모로 단기간에 달성 가능
 - 해외로드쇼, 포럼, 네트워킹 등 'IT 수출지원 및 산업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및 'IT 전략 품목 글로벌 마케팅 강화 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해당성과 달성 가능
 - 해외로드쇼(8개국), 비즈니스 포럼(3개 지역), 양자협력(4개국) 등 KISA의 2008년 해외 진출 지원 현황(총 16개국/지역) 및 전차 전권회의 참가국 수(총 166개국)를 고려하면, 전권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국 인사들과의 접촉 및 협력 기회가 최소 10배 이상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전권회의 개최 시 최소 22개 'IT분야 수출전략 거점국가(방통위 선정, 2009년 3월)' 만을 대상으로 해외로드쇼(8회 개최예산: 약 20억 원)와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외에서 약 55억 원을 투입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WiBro, DMB, IPTV, 한류 콘텐츠 등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은 이미 해외수요를 보유하고 있음
 - ※ 현지 관심도가 높은 22개 거점국가의 장·차관급 대표단 참가 예정

[표 3-11] IT 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개요

사업 주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구	KIICA, 현 KISA)
세부사업명	IT 수출지원 및 산업협력 인프라 강화	IT 전략 품목 글로벌마케팅 강화
세부 연관 활동 내역	 한 호 뉴(KANZ) Summit 개최 한 -EU ICT 포럼 개최 (6월, 서울) 양자간 정부 활동 및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말레이시아, 베트남, UAE, 헝가리) 	민관합동 해외로드쇼 8회 개최

자료: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국회제출용) 참조

- o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한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전세계 국가의 고위급 및 실무급 인사의 대거 방한은 비즈니스 기회 개발및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 o 이미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회원국 고위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이미지 강화의 효과가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는 개도국 고위급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사업기회 개발 및 확인 가능
- o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 전세계 191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할 제19차 전권회의는 국가브랜드, 특히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IT부문의 인지도 상승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국가브랜드 인지도 3% 상승으로 36조 원의 이미지 상승 효과를 얻는다고 분석(KOTRA, 2002)

4.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분석

가. 분석 체계

- o 대표적인 승수효과 분석방법인 산업연관분석을 사용
- 전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5년 실사표를 토대로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32개 산업으로 재분류
- 이 중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효과는 외국인이 개최지를 방문하여 창출하는 관광산업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일차적으로 관광산업을 5개(쇼핑업, 음식점, 숙박, 관광교통, 문화오락서비스) 부문으로 분류
- o 각 산업부문별 전국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생산·고용승수 도출
 - 생산유발계수는 다음의 행렬식을 통해 도출하며, 수식에서의 $(I-A)^{-1}$ 행렬이 생산유발계수 행렬임
 - ※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되는 각 산업부문간의 연쇄파급으로 인한 직·간접효과

$$AX+Y-M=X \implies X-AX=Y-M \implies (I-A)X=Y-M$$
$$\implies X=(I-A)^{-1}(Y-M)$$

- % A:투입계수행렬, X:총산출액 벡터, Y:최종수요 벡터, M:수입액 벡터, /:항등행렬, $(I-AI^{-1}:$ 생산유발계수
- 고용승수는 고용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
 - ※ 고용승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노동량
 - ·고용유발계수에서 고용계수를 제한 나머지가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간접고용 유발을 의미하고, 고용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 계수식은 다음과 같음

$$1 = \frac{L}{X}$$

- ※ l:노동계수, L:투입노동량, X:총산출액
- ※ 투입노동량은 한국은행 산업별취업자 경상표(2005년) 중 피용자수와 자영업자수가 모두 포함된 총취업자수를 활용
- · 전술한 고용계수를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하여 고용승수를 도출하였고, 식은 다음과 같으며, 수식에서 $\hat{l}(I-A^d)^{-1}$ 가 고용승수 행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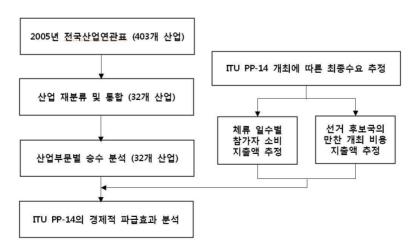
$$I=rac{L}{X}$$
을 풀면 $L=l$ X 가 되며, 여기에 $X=(I-A^d)^{-1}Y^d$ 를 대입하여 풀면, $L=\hat{l}(I-A^d)^{-1}Y^d$

-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최종수요를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유발계수행렬에 적용함으로써 타 산업에 파급되는 경제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19차 전권회의 참가자들의 관련 지출액에 의하여 유발된 생산 유발액을 측정하기 위해 제19차 전권회의 참가자들의 지출액을 최종수요에 대입한 후 타산업의 최종수요를 "0"으로 처리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제19차 전권회의 참가자들의 지출액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I-A)^{-1} \times C = O$$

- ※ (/-A)-1 : 생산유발계수행렬, C : 방한 외래관광객 지출액의 역행렬, ○: 생산유발효과의 역행렬
- o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최종 소비지출(외국인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 및 선거 후보국이 개최하는 연회 비용 지출액)을 각각 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관광산업으로 분류한 5개 부문 외에 항목별 예산내역을 토대로 3개(통신 및 방송, 목재 및 종이, 기타서비스)부문을 ITU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관련 산업으로 추가 분류

[그림 3-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체계도



나. 제19차 전권회의 유치에 따른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분석

□ 외국인 참가자 소비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o 제19차 전권회의 개최로 인한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직·간접적 경제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제19차 전권회의 개최 시 ITU 고위직 및 사무총국 직원을 제외한 회원국으로부터의 순수 외국인 참가자 소비 지출총액 103.9억 원에 대한 파급효과를 측정
- o 외국인 참가자의 국내 체류일 수 차이를 감안하여 6일 체류, 10일 체류 및 21일 체류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에 따른 파급효과를 개별 분석하였으며, 이를 합산하여 외국인 참가자 소비 지출총액에 따른 파급효과 결과를 산출
- o 참가자의 소비항목별 지출액에 부합하는 산업부문별 승수를 적용하여 각 산업이 이러한 최종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산업에 파급시킨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2]와 같음

[표 3-12] 외국인 참가자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결과

			/···!! = 1 . Q.L.\	
구분	생산유발(백만 원)			
' _	6일 체류	10일 체류	21일 체류	합계
숙박부문	1,284	2,139	2,246	5,669
식음료부문	667	1,111	1,167	2,945
쇼핑부문	815	1,358	1,426	3,599
교통부문	619	1,031	1,082	2,732
문화오락서비스부문	1,358	2,263	2,377	5,998
계	4,743	7,902	8,298	20,943
구분	고용유발(명)			
, =	6일 체류	10일 체류	21일 체류	합계
숙박부문	21.4	35.7	37.5	94.6
식음료부문	11.5	19.2	20.1	50.8
쇼핑부문	13.4	22.3	23.4	59.1
교통부문	9.5	15.8	16.6	41.9
문화오락서비스부문	12.4	20.7	21.7	54.8
계	68.2	113.7	119.3	301.2

- 주: 1. ITU PP-14 외국인 참가자 중 ITU 관계자 및 스텝을 제외한 회원국으로부터의 순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임
 - 2. 방문객 지출항목 중 기타 부문은 문화오락서비스부문에 포함시켰음
 - 3. 고용창출효과는 FTE(Full Time Equivalent) Job에 해당

- o 생산유발효과: 총 생산유발액은 약 209.4억 원으로 평가
 - = 참가자 항목(숙박, 식음료, 쇼핑, 교통, 문화오락서비스)별 지출액 x 관련 생산승수
- 부문별로는 문화오락서비스부문과 숙박부문이 각각 약 60억 원, 약 5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 o 고용유발효과: 총 고용창출 효과는 301.2명으로 평가
 - = 참가자 항목(숙박, 식음료, 쇼핑, 교통, 문화오락서비스)별 지출액 x 관련 고용승수
- 부문별로는 숙박 부문이 94.6명으로 가장 많은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 선거 후보국의 연회 개최 비용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o 제19차 전권회의 개최로 인한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앞서 추정된 ITU 전권회의 선거 후보국의 연회 개최 비용 지출총액 14.3억 원에 대한 파급효과를 측정
- o 연회 개최는 주로 식음료 서비스와 관련된다고 보고, 본 지출액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및 결과 해석의 편의상 이를 음식점 산업 부문 승수에 적용하여 전 산업에 유발시킨 생산 및 고용 효과를 산출

[표 3-13] 선거 후보국의 연회비용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결과

유발효과	ITU PP 선거 후보국의 연회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효과(백만원)	3,586
고용효과(명)	61.8

- 주: 1. ITU 선거 후보국들의 만찬 비용의 파급효과임
 - 2. 고용창출효과는 FTE(Full Time Equivalent) Job에 해당
- o 생산유발효과: 총 생산 유발액은 약 35.9억 원으로 평가
 - = 선거후보국 오·만찬비용 x 음식점업 생산승수
- o 고용유발효과: 총 고용창출 효과는 61.8명으로 평가
 - = 선거후보국 오·만찬비용 x 음식점업 고용승수

□ 총 파급효과 분석

o 제19차 전권회의 개최가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시킬 직·간접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ITU 관계자 및 스텝을 제외한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 지출 추정 총액 103.9억 원과, 선거 후보국들의 연회비용 지출 추정 총액 14.3억 원을 합한 총 파급효과를 측정

[표 3-14] 제19차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

		총경제적 파급효과	
유발효과	외국인 참가자 소비 지출액	선거후보국 연회비용 지출액	합계
생산효과(백만원)	20,943	3,586	24,529
고용효과(명)	301.2	61.8	363

- 주: 1. 외국인 참가자 소비 지출액에 대한 분석은 ITU PP-14 외국인 참가자 중 ITU 관계자 및 스텝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 지출액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임
 - 2. 선거 후보국 연회비용 지출액에 따른 파급효과는 산업 부문별 승수 중 음식점 승수를 적용
 - 3. 고용창출효과는 FTE(Full Time Equivalent) Job에 해당하며, 1명 당 1백만 원의 임금액으로 계산
 - o 총 생산유발효과: 약 245억 원으로 추산
 - = (참가자 항목별 지출액 x 관련 생산승수) + (선거후보국 오·만찬비용 x 음식점업 생산승수)
 - o 총 고용유발효과: 약 363명으로 추산
 - = (참가자 항목별 지출액 x 관련 고용승수) + (선거후보국 오·만찬비용 x 음식점업 고용승수)

제2절 APT 총회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

o APT 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조직위 추산에 기초하여 참가인원을 134명으로 예상하고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지출예상액은 '2007년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중 정부회의 참가자의 평균 소비 지출액(평균 체류일 수 6.5일 적용)을 토대로 산출함

o 생산파급효과

- APT 총회 개최기간 참가자의 지출액이 직·간접 효과를 통하여 국내 경제에 발생시킬 총 생산유발 파급액은 약 8.8억 원에 이을 것으로 예상됨

o 고용파급효과

- APT 총회 개최기간 참가자의 지출액이 직·간접 효과를 통하여 국내 경제에 발생시킬 총 고용창출 효과는 약 12.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표 3-15] 제11차 APT 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파급효과	APT 총회 참가자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효과(백만 원)	883
고용효과(명)	12.7

주: 고용창출효과는 FTE(Full Time Equivalent) Job에 해당

제4장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1절 ITU 전권회의 개최의 정책적 타당성

□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한 국제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주도

- o 전권회의는 191개 회원국의 정상, 장·차관급 인사 및 주요 정보통신기업의 CEO를 포함 약 2,1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임
 - IT강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증명하고, 국제 IT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일본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2번째로 전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차원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주도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o 국제 및 국가별 정보통신정책의 조화와 관련하여 회원국 상호간 국제협력·규제 및 표준화에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o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최상의 IT서비스 제공 촉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기술 협력활동 등이 가능
- o 191개 회원국 중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협력이 취약한 국가 대표들과도 교류기반 조성
- 국가 외교측면에서의 큰 효과 기대 가능
-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 강화 기대

□ 국가홍보 기여

- o 회원국 대표단 및 동반 산업계 관련자들에게 IT Korea의 브랜드를 한껏 높이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
- o 개도국을 비롯하여 IT산업에 대한 정부 관여가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

- o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린 IT를 포함한 한국 IT 정책성과를 홍보 및 확산할 수 있는 기회
- 현재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미래 성장동력인 그린 IT와 관련한 성과가 전권회의가 개최될 2014년쯤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 o 해당 회의 결의 및 결정은 모두 개최지가 명시되므로 'OECD IT 장관회의 서울 선언문'의 경우처럼 국제기구 활동 및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 도시 및 한국의 인지도 제고

□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o 정보통신 분야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 ITU 전권회의 유치 시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
- 참가자 대부분이 해당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므로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 ※ 타 행사와 비교하여 각 참가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 IT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가비율이 더 높으므로 한국 IT 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o ITU와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ITU내에서의 위상제고 및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 o ITU 전권회의 유치는 ITU 선출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
- Yoshio Utsumi(일본) 사무총장의 경우 제14차 교토 전권회의에서 의장으로 활동 수행, 제15차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당선됨
- 터키(제17차 전권회의)의 경우를 제외, 대부분의 경우 전권회의 주최국 후보가 RRB 의원으로 당선
- 한국의 기여도 및 충분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 중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중국만이 선출직에 먼저 진출한 바, 전권회의 개최 및 의사국 수행 등을 통해 더욱 입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선출직 진출 추진이 필요
- o ITU 내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기반으로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국제포럼에서의 활동 강화 기대 가능

[표 4-1] 기존 개최국 사례를 통해서 본 ITU 전권회의 정책적 파급효과

개최국	개최 년도	정책적 성과 및 파급효과
		・ 교토 전권회의(PP-94) 당시 일본은 Yoshio Utsumi를 의장으로 선발, PP-9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일본 (교토) 1	1994	• 차기 전권회의(PP-98)에서 Yoshio Utsumi가 사무총장으로 당선 - 일본 우정성은 당시 출마 기고문(일본 우정성 작성)을 통해 Yoshio Utsumi가 PP-94 의장직을 수행하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 끌고 세계통신정책포럼을 창설하는 등 독보적 리더십을 보유 하고 있음을 강조
		• 즉, 일본의 PP-94 개최는 Yoshio Utsumi 사무총장 후보의 자질을 적극적 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사무총장직 진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
미국 (미네아 1998 폴리스)		 미국은 1994년 ITU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를 통해 엘 고어 부통령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초고속정보통신망 (GII)을 범세계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창 - IT부문의 경쟁우위를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1998	·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PP-98)에서 ITU 전략계획 목표 중 2번째로 GII의 전세계적인 보급 및 전세계의 정보통신사회 참여 촉진이 채택됨
		· 즉, 미국은 PP-98을 개최함으로써 향후 4년간 ITU 및 191개국 회원국의 정보통신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자국의 이익과 직접 연관된 이슈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
모로코 (마라 2002 케시)		 모로코는 2002년부터 IT부문을 국가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e-Morocco 전략을 채택(모로코 정통부 장관 PP-02 개회사) 모로코는 e-Morocco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IT분야에서 문호 개방정책, 민영화 및 관리적 규제 틀에 기반한 자유화 정책을 채택
	2002	 PP-02의 전략계획 중 제6목표로 회원국, 특히 모로코와 같은 개도국에게 민영화, 경쟁, 세계화 및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전파한다는 내용을 채택 즉, 모로코는 PP-02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4년 간 전 세계 191개 회원국의 정보통신정책 활동 방향이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한 것으로 사료
		 또한, 모로코 수상은 마라케시 전권회의(PP-02) 개회사를 통해 PP-02 기간 중 모로코에서 모하메드 6세 정권의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됨을 언급 전세계 장·차관급 대표단이 모인 PP-02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모하메드 6세 정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지지 유도 국제사회는 본 선거를 모하메드 6세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 봄 (Financial Times, 2002.9.27)

터키 (안탈랴)	2006	 터키 교통부 장관은 안탈랴 전권회의(PP-06) 개회사에서 터키 정부가 e-government 프로젝트 성과를 홍보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 PP-06을 통해 e-government 프로젝트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터키가 유럽연합(EU) 가입의 선결조건인 '코펜하겐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계기로 삼음

제2절 APT 총회 개최의 정책적 타당성

- o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
- APT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IT부문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으며,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기반이 튼튼하여야 함
- 중국, 일본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후발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짐
- APT 최고회의인 총회 개최를 통해 역내 리더십 및 기반을 강화
- o APT 고위직 진출 추진
- APT에 대한 기여와 리더십 발휘를 통해 APT사무총장직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
- o 역내국가와의 협력기반 강화
- 중국, 일본, ASEAN국가 등 전략국가와의 협력제고는 물론 서남아시아 국가, 태평양 국가 등 취약지역 국가와의 협력기반 강화 기회 제공
- o 한국 IT발전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 한국의 성공적인 IT발전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APT회원국의 장, 차관 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제고하고, 협력방향 도출 가능

제5장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의 사회 문화적 타당성 분석

□ 세계화 심화 및 문화교류

- o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유치로 인해 한국의 문화를 널리 소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문화적 교류 효과도 기대
- o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식 국제화 등으로 국민의 국제 감각을 높이고 자부심 및 의식수준 향상 가능

□ 한류확산 기회

o 한국의 IT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경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한류 확산 추진

□ 개최도시의 환경 개선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o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준비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정비, 교통망 확충, 환경 및 조경개선, 항공 및 항만시설정비, 서비스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파급효과 예상
 - 개최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예상
- o 전권회의 유치로 인해 시민의식의 글로벌화
- 나아가 도시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함께 성숙함으로써 도시 운영 메커니즘의 선진화 기대

제6장 결론

- o 본 보고서는 ITU 전권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9차 ITU 전권회의 및 제11차 APT 총회를 사례로 정보통신 분야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대한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음
- o ITU는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 국제기구로서 전세계 정보통신 분야 전반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업무 수행
- o ITU 전권회의는 ITU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서, 매 4년마다 ITU 191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단이 모여 ITU 전략 및 예산을 논의·결정하고, 선출직 및 이사국을 선출하며, 정보통신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
- 총 3주간 회의 개최, 2,000여명 외국인 참석
- o APT는 아시아태평양 내 유일한 전기통신관련 전문 국제기구로, 역내 전기통신 사업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관련 상호교류활동 지원
- o APT 총회는 APT 최고위 의상결정기구로, 매 3년마다 APT 32개 회원 및 준회원 대표단이 모여 APT 일반정책 및 원칙을 수립하고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선출하며, 정보통신 관련 주요이슈를 논의
- APT 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총 1주간 회의 개최, 150여명의 외국인 참석
- o ITU 전권회의와 같은 국제행사의 유치는 성장,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것을 기대
- ITU 전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소득순환 측면에서 국외로부터의 주입으로 인한 총 65.9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국외누출(17.8억 원) 대비 약 370%]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국내 IT 산업 홍보를 위한 해외로드쇼와 같은 성격의 연계행사를 국내에서 수행할 경우, 해외에서 약 55억 원 정도를 투입한 효과 예상
 - · 외국인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생산효과 약 245억 원, 고용효과 약 363명
- APT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8.8억 원의 생산효과 및 12.7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예상됨
- o 또한,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에도 기여
-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대상국가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 기회 확대 가능

- IT 전시회, 체험서비스, 산업시찰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한국 IT산업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홍보 및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 가능
- o ITU 전권회의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정책적 및 사회문화적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의장국으로서 세계 IT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한국에 유리한 회의결과를 도출
- 그린 IT를 포함한 한국의 IT정책 성과 홍보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해당 회의 결과물(결의 및 결정)에 개최지(예: 서울) 명시를 통한 지속적인 한국의 국제사회 인지도 제고
- 전 세계 대표단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인지도를 제고하고, 아프리카 등 지금까지 협력 관계가 취약한 국가와 IT 분야의 국제협력기회 확대
- 전 세계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한류 방송통신 콘텐츠 확산 등
- o 즉, ITU 전권회의 등과 같은 성격의 국제행사 개최는 투입되는 비용보다 큰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o 향후 유사 행사의 유치를 결정할 경우,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ITU 전권회의 및 APT 총회 개최 타당성 검토를 참고로 경제, 정책,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검토 하에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 헌

- 고일동 외(2005), 『2012 여수박람회 유치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김경희 외(2006), "ITU Telecom Asia 2008 부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현안연구≫ 5호,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동향 분석센터.
- 김철완 외(2007), 『'06년 ITU 전권회의 정책적 함의와 전략적인 국제기구 활동 강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남상열 외(2008),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위원회(2008),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결과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 서보현 외(2002), 『국제기구의 주요정보통신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심상달 외(200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 윤세목(2004), 『국제회의산업론』, 현학사.
- 정보통신부(1998), 『제15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의 참가보고서』, 정보통신부.
- _____(2002), 『제16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의 참가보고서』,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6), 『제17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 회의 참가보고서』, 정보통신부.
- 조동호 외(2000), 『문화·관광·체육·과학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주수현 외(2004), "2005 APEC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 체신부(1994), 『제14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의 참가보고서』, 체신부. 한국관광공사(2008),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2009), 『ITU 전권위원회 및 APT 총회 유치 파급효과 분석』,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한국은행(2008), 『산업연관표(2005년)』, 한국은행.
- 한혜진(2000), 『국제행사 유치와 홍보전략』, 나남출판.

APT(2002), APT Constitution, APT.

APT(2008), The APT Yearbook 2008, APT.

ITU(2006),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UIA(2009), 2008 Statistics Report, UIA.

www.itu.int www.aptsec.org

부 록

ITU 회원국 현황

(2009년 현재, 총 191개국)

지역	국가명	가입일자
	Antigua and Barbuda	04/02/1987
	Argentine Republic	01/01/1889
	Bahamas (Commonwealth of the)	19/08/1974
	Barbados	16/08/1967
	Belize	16/12/1981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01/06/1907
	Brazil (Federative Republic of)	04/07/1877
	Canada	01/07/1908
	Chile	01/01/1908
	Colombia (Republic of)	25/08/1914
	Costa Rica	13/09/1932
	Cuba	16/01/1918
A	Dominica (Commonwealth of)	28/10/1996
(미주,	Dominican Republic	11/07/1926
35개국)	Ecuador	17/04/1920
	El Salvador (Republic of)	12/10/1927
	Grenada	17/11/1981
	Guatemala (Republic of)	10/07/1914
	Guyana	08/03/1967
	Haiti (Republic of)	10/10/1927
	Honduras (Republic of)	27/10/1925
	Jamaica	18/02/1963
	Mexico	01/07/1908
	Nicaragua	12/05/1926
	Panama (Republic of)	14/07/1914
	Paraguay (Republic of)	27/09/1927
	Peru	12/07/1915

	Saint Kitts and Nevis (Federation of)	15/03/2006
	Saint Lucia	04/09/1997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5/03/1983
	Suriname (Republic of)	15/07/1976
	Trinidad and Tobago	06/03/1965
	United States of America	01/07/1908
	Uruguay (Eastern Republic of)	01/07/1902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13/08/1920
	Andorra (Principality of)	12/11/1993
	Austria	01/01/1866
	Belgium	01/01/1866
	Bosnia and Herzegovina	20/10/1992
	Croatia (Republic of)	03/06/1992
	Cyprus (Republic of)	24/04/1961
	Denmark	01/01/1866
	Estonia (Republic of)	22/04/1992
	Finland	01/09/1920
	France	01/01/1866
	Germany (Federal Republic of)	01/01/1866
	Greece	01/01/1866
В	Hungary (Republic of)	01/01/1866
 (서유럽,	Iceland	01/10/1906
33개국)	Ireland	08/12/1923
00/11 7)	Italy	01/01/1866
	Latvia (Republic of)	11/11/1991
	Liechtenstein (Principality of)	25/07/1963
	Lithuania (Republic of)	12/10/1991
	Luxembourg	02/03/1866
	Malta	01/01/1965
	Monaco (Principality of)	01/07/1908
	Netherlands (Kingdom of the)	01/01/1866
	Norway	01/01/1866
	Portugal	01/01/1866
	San Marino (Republic of)	25/03/1977
	Slovenia (Republic of)	16/06/1992

	Spain	01/01/1866
	Sweden	01/01/1866
	Switzerland (Confederation of)	01/01/1866
	Turkey	01/01/1866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4/02/1871
	Vatican City State	01/06/1929
	Albania (Republic of)	02/06/1922
	Armenia (Republic of)	30/06/1992
	Azerbaijani Republic	10/04/1992
	Belarus (Republic of)	07/05/1947
	Bulgaria (Republic of)	18/09/1880
	Czech Republic	01/01/1993
	Georgia	07/01/1993
	Kazakhstan (Republic of)	23/02/1993
С	Kyrgyz Republic	20/01/1994
(동유럽/	Moldova (Republic of)	20/10/1992
중앙	Montenegro	21/06/2006
아시아,	Poland (Republic of)	01/01/1921
21개국)	Romania	09/02/1866
	Russian Federation	01/01/1866
	Serbia (Republic of)	01/06/2001
	Slovak Republic	23/02/1993
	Tajikistan (Republic of)	28/04/1994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04/05/1993
	Turkmenistan	07/05/1993
	Ukraine	07/05/1947
	Uzbekistan (Republic of)	10/07/1992
	Algeri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03/05/1963
	Angola (Republic of)	13/10/1976
	Benin (Republic of)	01/01/1961
	Botswana (Republic of)	02/04/1968
	Burkina Faso	16/01/1962
	Burundi (Republic of)	16/02/1963
	Cameroon (Republic of)	22/12/1960
	Cape Verde (Republic of)	10/09/1976
D	Central African Republic	02/12/1960

	Chad (Danublia of)	05/11/1000
	Chad (Republic of)	25/11/1960
	Comoros (Union of the)	05/01/1976
	Congo (Republic of the)	13/12/1960
	Côte d'Ivoire (Republic of)	23/12/196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06/12/1961
	Djibouti (Republic of)	22/11/1977
	Egypt (Arab Republic of)	09/12/1876
	Equatorial Guinea (Republic of)	02/07/1970
	Eritrea	06/08/1993
	Ethiopia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20/02/1932
	Gabonese Republic	28/12/1960
	Gambia (Republic of the)	27/05/1974
	Ghana	17/05/1957
	Guinea (Republic of)	09/03/1959
	Guinea-Bissau (Republic of)	15/01/1976
	Kenya (Republic of)	11/04/1964
	Lesotho (Kingdom of)	26/05/1967
(아프리카,	Liberia (Republic of)	10/10/1927
53개국)	Madagascar (Republic of)	11/05/1961
	Malawi	19/02/1965
	Mali (Republic of)	21/10/1960
	Mauritania (Islamic Republic of)	18/04/1962
	Mauritius (Republic of)	30/08/1969
	Morocco (Kingdom of)	01/11/1956
	Mozambique (Republic of)	04/11/1975
	Namibia (Republic of)	25/01/1984
	Niger (Republic of the)	14/11/1960
	Nigeria (Federal Republic of)	11/04/1961
	Rwanda (Republic of)	12/12/1962
	Sao Tome and Principe (Democratic Republic of)	01/09/1976
	Senegal (Republic of)	15/11/1960
	Seychelles (Republic of)	17/09/1999
	Sierra Leone	30/12/1961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03/02/1953
	Somali Democratic Republic	28/09/1962
	South Africa (Republic of)	01/01/1910
	Codin / iniod (Hopublic OI)	01/01/1010

	Sudan (Republic of the)	23/10/1957
	Swaziland (Kingdom of)	11/11/1970
	Tanzania (United Republic of)	31/10/1962
	Togolese Republic	14/09/1961
	Tunisia	14/12/1956
	Uganda (Republic of)	08/03/1963
	Zambia (Republic of)	23/08/1965
	Zimbabwe (Republic of)	10/02/1981
	Afghanistan	12/04/1928
	Australia	27/05/1878
	Bahrain (Kingdom of)	01/01/1975
	Bangladesh (People's Republic of)	05/09/1973
	Bhutan (Kingdom of)	15/09/1988
	Brunei Darussalam	19/11/1984
	Cambodia (Kingdom of)	10/04/1952
	China (People's Republic of)	01/09/192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4/09/1975
	Fiji (Republic of)	05/05/1971
	India (Republic of)	01/01/1869
	Indonesia (Republic of)	01/01/1949
Ε	Iran (Islamic Republic of)	01/01/1869
(아시아	Iraq (Republic of)	12/11/1928
태평양,	Israel (State of)	24/06/1948
49개국)	Japan	29/01/1879
	Jordan (Hashemite Kingdom of)	20/05/1947
	Kiribati (Republic of)	03/11/1986
	Korea (Republic of)	31/01/1952
	Kuwait (State of)	14/08/1959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03/04/1952
	Lebanon	12/01/1924
	Malaysia	03/02/1958
	Maldives (Republic of)	28/02/1967
	Marshall Islands (Republic of the)	22/02/1996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18/03/1993
	Mongolia	27/08/1964

Myanmar (Union of)	15/09/1937
Nauru (Republic of)	10/06/1969
Nepal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05/12/1957
New Zealand	03/06/1878
Oman (Sultanate of)	28/04/1972
Pakistan (Islamic Republic of)	26/08/1947
Papua New Guinea	31/10/1975
Philippines (Republic of the)	25/05/1912
Qatar (State of)	27/03/1973
Samoa (Independent State of)	07/10/1988
Saudi Arabia (Kingdom of)	07/02/1949
Singapore (Republic of)	22/10/1965
Solomon Islands	27/07/1987
Sri Lanka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01/01/1897
Syrian Arab Republic	12/01/1924
Thailand	21/04/1883
Tonga (Kingdom of)	07/01/1972
Tuvalu	15/08/1996
United Arab Emirates	27/06/1972
Vanuatu (Republic of)	30/03/1988
Viet Nam (Socialist Republic of)	24/09/1951
Yemen (Republic of)	01/01/1931

(2009.7 현재)

국 가	정회원	준회원	참관회원
Afghanistan	1		
Australia	1		5
Bangladesh	1		3
Bhutan	1		1
Brunei Darussalam	1		
Cambodia	1		
China, P.R.	1		3
Fiji	1		2
India	1		7
Indonesia	1		4
Iran, Islamic Rep.	1		2
Japan	1		36
Korea, DPR	1		
Korea, Rep.	1		6
Lao, PDR	1		
Malaysia	1		13
Maldives	1		2
Marshall Islands	1		
Micronesia	1		
Mongolia	1		3
Myanmar	1		
Nauru	1		
Nepal	1		2
New Zealand	1		1
Pakistan	1		3
Palau	1		
Papua New Guinea	1		1
Philippines	1		2
Samoa	1		
Singapore	1		5
Sri Lanka	1		2
Thailand	1		9
Tonga	1		1
Vietnam	1		
Cook Islands		1	
Hong Kong, China		1	4
Macao, China		1	2
Niue		1	
Total	34	4	119

Ⅲ ITU 회원국 분담금 현황

(2009년 3월 현재)

순위	국가	분담금 (단위: CHF(원))	분담률
1	미국	30단위 = 9,540,000(약 109억)	8.6 %
1	프랑스	"	"
1	독일	"	"
1	일본	"	"
5	캐나다	18단위 = 5,724,000(약 65억)	5.2 %
6	이태리	15단위 = 4,770,000(약 54억)	4.3 %
7	호주	13단위 = 4,134,000(약 47억)	3.7 %
8	한국	10단위 = 3,180,000(약 36억)	2.9 %
8	사우디아라비아	"	"
8	스위스	"	"
8	중국	"	"
8	러시아	"	"
8	영국	"	"
8	스페인	"	"
8	인도	"	"
16	노르웨이	5단위 = 1,590,000(약 18억)	1.4 %
16	네덜란드	"	"
16	스웨덴	"	"
19	벨기에	4단위 = 1,272,000(약 14억)	1.1 %
19	핀란드	"	"
19	남아프리카공화국	"	"
	기 타	75단위	21.6 %
	합 계	348단위 = 110,664,000(약 1,273억)	100.00 %

주) 1 CHF: 약 1,150원, 1단위 : 318,000CHF

IV APT 회원 분담금 현황

(2008년 현재)

구 분	정부(Member) 및 준회원	민간 (Affiliate Members)
일 본	40 Unit	48 Unit (33개사)
한 국	20 Unit	9 Unit (9개사)
중 국	10 Unit	3.5 Unit (4개사)
인 도	6 Unit	15 Unit (11개사)
호 주	5 Unit	2.5 Unit (4개사)
말레이시아	4 Unit	4 Unit (7개사)
태 국	4 Unit	4.5 Unit (8개사)
아프가니스탄	2 Unit	-
방글라데시	2 Unit	_
브루나이	2 Unit	_
인도네시아	2 Unit	_
뉴질랜드	2 Unit	0.5 Unit (1개사)
파키스탄	2 Unit	3 Unit (4개사)
필리핀	2 Unit	2 Unit (4개사)
싱가포르	2 Unit	3 Unit (5개사)
북한	0.5 Unit	-
기타	23.5 Unit	11 Unit
계	129 Unit	106 Unit

주) 1단위: 8,346 USD

V │ ITU PP 유치 파급효과 세부 도출 과정

□ 국민소득순화 측면에서의 비용편익분석

- o 국외로 누출(leakage)되는 비용 약 17.8억 원
- = 1등석항공료*7인 + 비즈니스석 항공료*230인 + 2.268.980*1단위(보험료)
- ※ 'ITU의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주최 규정'에 따라 ITU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3개 부문국 국장 및 전파규칙위원회 의장/부의장과 스텝 230명(PP-06시 파견된 ITU 사무총국 직원 수 참조)에 대해 지불하게 될 항공료
- ※ ITU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3개 부문국 국장, RRB 회장 및 부회장은 일등석, 스텝 230명은 비즈니스 석('ITU의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주최 규정'에 따라 제네바 ~개최도시 간 비행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원 비즈니스 석 제공)으로 단가계산
- ※ 취리히 경유. 091001 출발. 090618 발행 기준
- ※ 일비는 '터키정부와 ITU간 협의문'에 기록된 ANNEX 1 자료에 기입된 전체 보험료에 2009년 5월 평균 최종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
 - o 국외로부터의 주입(injection)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약 65.9억 원
 - = (참가자¹⁾ 항목별 지출액²⁾x관련 산업³⁾ 부가가치율*) +

(선거후보국 연회비용x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o B/C 비율 (비용대비 편익비율) 3.70(370%) = 65.9억 원/17.8억 원
- □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 o 생산파급효과 약 245억 원
- = (참가자 $^{1)}$ 항목별 지출액 $^{2)}$ x관련 산업 $^{3)}$ 생산승수)+(선거후보국 연회비용x음식점업 생산승수)
- o 고용파급효과 약 363명
 - = (참가자¹⁾ 항목별 지출액²⁾x관련 산업³⁾ 고용승수)+(선거후보국 연회비용x음식점업 고용승수)
- 1) 참가자를 6일, 10일, 21일 체류 참가자로 구분하여 계산
- 2) 지출액: 숙박비, 쇼핑비, 식음료비, 교통비, 관광비 등 포함
- 3) 관련산업: 숙박업, 소매업, 음식점업,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등 적용
- ※ 생산승수 및 고용승수는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403개 부문)를 토대로 산출
- ※ 각 부문별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부가가치계/총투입액** 으로 계산
- ※ 단 참가자는 6일, 10일, 21일 체류 참가자로 구분하여 계산

VI

ITU의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 개최 지침

□ 개요

o 관련 문서: [Doc. C07/22(Rev.1), 2007.7.31]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ITU의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를 위한 주최국 협정서 모델 (Model Host-Country Agreement For Conference and Assemblies of the Union held away from Geneva)

o 배경

- 결의 144(안탈랴, 2006)에 의거, ITU는 컨퍼런스 및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인프라에 관한 요구사항, 비용분담 등을 포함한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ITU의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를 위한 주최국 협정서 모델(이하 모델 HCA)' 수립
- ITU 이사회는 본 문서를 검토 후 채택할 예정

o 예산책정 관련 주요 내용

- 제네바 이외의 지역에서 컨퍼런스 및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최국 정부가 관련 추가지출(출장비, 회의장소, 장비 및 기기 등)을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
- 사무총장 및 차장, 부문국장(3인), 전파규칙위원회 위원(2인) 및 사무총국 직원 (최대 300명의 여행경비, 보험료 및 일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포함)를 제공하도록 규정
- o 참조: 결의 144(안탈랴, 2006), CV 97, 결의 5(교토, 1994)

o 본문

지침 원문	주요 내용
1. Background	1. 배경
1.1 In Resolution 5 (Kyoto, 1994), while recommending that world conferences and assemblies of the Union should normally be held at the seat of the Union,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considers that there are advantages in holding certain conferences in countries other than the headquarters country. Indeed, throughout the Union's history, many successful landmark ITU conferences and assemblies have taken place away from headquarters.	o 결의 5(교토, 1994)를 통해 ITU는 제네바 외 지역에서 ITU 컨퍼런스 및 총회를 개최시 회의 주최국이 행사시 필요한 추가비용 및 설비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
1.2 That resolution indicates, however, that invitations to hold such events should only be accepted insofar as the host government agrees to defray the additional expenditure involved and to provide the requisite facilities.	- 개최국은 ITU 사무총국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주최국협약(host-country agreement, HCA) 체결 필요
1.3 When there is an inviting government,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conference or assembly, and the needs of the secretariat, are established in a host-country agreement (HCA).	
2. PP-06 discussion and decisions	2. PP-06 논의 및 결정
2.1 Due to the increasingly stringent efficiency measur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in respect of ITU conferences and assemblies (shorter time-frames, recourse to remote services, intensive use of IT equipment, connectivity, etc.), and taking into account increasing numbers of delegates and constant technological advances, the facilities required for the holding of ITU conferences and assemblies have grown significantly in magnitude, complexity and importance.	o 결의 144(안탈라, 2006)를 통해 ITU는 각 행사 개최시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2년 전까지 사무 총장이 모델 HCA를 준비하여 이사회에 검토 받도록 규정 - 투명성 제고, 회원국들의 신중한 회의 주최
2.2 With this in mind, PP-06 recognized that the defrayal of the additional expenditure and the definition and provision of the requisite facilities and services were central to the success of conferences and assemblies held away from headquarters. These are also key factors for all parties concerned (potential host countries, the secretariat and the Council)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he selection of the venue of conferences and assemblies.	결정 및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함
2.3 Accordingly, PP 06 concluded that early availability of the texts of HCAs would increase transparency, assist Member States contemplating inviting and hosting an ITU conference or assembly, and serve as a basis for the Union to accept an invitation. This would also leave adequate time for finalization and ratification of the HCA, thereby enabling the host government to fulfil all the commitments and requirements laid down therein.	

	지침 원문	주요 내용
2.4	To this end, Resolution 144 (Antalya, 2006) instructs the Secretary-General to prepare model HCAs and the annexes thereto, including the requirements in terms of basic infrastructure, for each of the conferences and assemblies of the Union, at least two years before the proposed date of the conference or assembly; to submit these to the Council,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any measures that may be appropriate; and to provide them to Member States before any decision is taken concerning the selection of the host country for a conference or assembly.	
3. I	Follow-up by the Secretary-General	3. 사무총장의 후속조치
3.1	In order to respond fully and expeditiously to Resolution 144 (Antalya, 2006), the Secretary-General has drawn up a model HCA with all the requisite annexes, based on past agreements and the secretariat's extensive experience, together with an explanatory note on the procedure for hosting conferences/assemblies outside ITU headquarters. The annexes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o 결의 144(안탈랴, 2006)에 따라 사무총장은 모델 HCA를 작성하였음 - 본 모델 HCA는 ITU의 모든 컨퍼런스 및 총회에 적용됨
3.2	The proposed model HCA covers all the various existing conferences and assemblies of the Union.	
4. I	Required action	4. 실천사항
	Resolution 144 (Antalya, 2006) instructs the Council to review and adopt, at the first session after they have been made available, model HCAs and the annexes thereto, including the requirements in terms of basic infrastructure, for each of the conferences and assemblies of the Union, and to adopt any measures that may be appropriate.	o 결의 144(안탈랴, 2006)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본 모델 HCA 및 관련 Annex를 검토 후 채택 필요
4.2	The Council is thus invited • to adopt the model HCA and associated annexes set out in annex A hereto; • to take note of the explanatory note set out in annex B hereto; • to adopt any other measures it may deem appropriate.	- Annex A의 모델 HCA 및 관련 Annex 채택 - Annex B의 보충설명 검토 - 기타 필요사항 채택

o ANNEX A (모델 HCA 및 관련 Annex)

지침 원문	주요 내용
PREAMBLE	서언
(축약)	│ │o 개최국 정부와 ITU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함
NOW THEREFORE the Government, represented by [to be completed], and ITU,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General,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the "Parties")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I Definitions	제1조: 정의
1.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term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ny delegate, member of a delegation [representative of Sector Members concerned]22) To be includ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onference/assembly.) or observer invited to the [Conference/Assembly] by the Government or the Secretary(see Article1) of the Convention and Section [1]) of the General Rules), including any observer pursuant to Resolution(Rev. Antalya, 2006), Resolution(Kyoto, 1994) and Council Resolution[together with the [Chairman and Vice[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see No.of the Convention)]2).	o 'Participants'는 결의 99(안탈랴, 2006) 및 전파 규칙위원회의 이사회결의 741에 의거한 참관자를 포함한 모든 회의 참가자를 칭함 o 'ITU Official'은 ITU 선출직을 포함, 회의를 위해 ITU가 공식적으로 고용한 모든 직원을 칭함
1.2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term "ITU official"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ny elected official of ITU taking part in the [Conference/Assembly], any ITU official or staff member assigned to the [Conference/Assembly] or any official specifically recruited by ITU for the [Conference/Assembly].	
Article II Site and dates of the [Conference/Assembly]	제2조: 개최 일정
2.1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be held at the [name of the Conference Centre] in [city, country].	 o 개최 일정, 설비 등 관련 구체적 항목은
2.2 The official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take place on [date], and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in principle complete its work on [date].	Annex 2, 3, 4 참조
2.3 Specific conditions related to the precise dates during which the premises, facilities, services and local staff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see Article VII below) must be made available and fully operational are specified in Annexes 2, 3 and 4 respectively to this Agreement.	

지침 원문

Article III Invitations and admission

- 3.1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admission and those of the General Rules relating to invitations when there is an inviting government shall apply to the [Conference/Assembly], without reservation.
- [3.2 Invitations to take part in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be sent directly by the Government to ITU Member States. The Secretary shall also issue invitations to [Sector Members and to]those organizations and entities that may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Assembly] as observers.]
- [3.2 Invitations to take part in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be sent through the Secretar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o ITU Member States. The Secretary General shall also issue invitations to [Sector Members and to]those organizations and entities that may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Assembly] as observers.]
- [3.2 Invitations to take part in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be sent directly by the Government to ITU Member States with which the Government has diplomatic relations, and through the Secretary General,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o ITU Member States with which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The Secretary shall also issue invitations to [Sector Members and to]those organizations and entities that may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Assembly] as observers.]
- 3.3 The Government, in its capacity as host government, shall authorize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nd all ITU officials taking part in the work of the [Conference/Assembly] to enter [name of the State] and remain within the country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ir duties or mission in connection with the [Conference/Assembly]. This authorization shall also apply to their accompanying spouses and minor children.
- 3.4 To that end, the Government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issuing the necessary visas and entry permits, where required, to all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nd ITU officials free of charge, as speedily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two (2)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provided application for the visa is made at least three (3) week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if the application is made later, the visa shall be granted not later than three (3)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Arrangements shall also be made to ensure that visas and entry permits are delivered at relevant points of entry in [name of the State] to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nd ITU officials who were unable to obtain them prior to their arrival.

주요 내용

제3조: 초청 및 출입국 관리

- o 개최국이 ITU회원국에게 직접 초정장을 보내며, ITU사무총장은 부문회원 및 유관기관에 초청장 발송
- 또는 ITU사무총장이 개최국을 대신하여 ITU 회원국에게 초청장 발송
- 또는 개최국과 ITU사무총장이 역할분담하여 초청장 발송
- o 개최국은 행사관계자 및 참가자(배우자 및 아동인 자녀 포함)가 무료로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행사 3주전 비자신청서 발급, 2주 전까지 승인

지	침	워	무
•			

Article IV Privileges and immunities

- 4.1 In accordance with No. 166 of the General Rules, the Government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grant franking privileges in respect of telegrams, telephone services (including facsimile communications) and telex services and shall provide facilities to all persons covered by these provisions, who shall be informed of the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these privileges and facilitie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 4.2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Agreement and its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Conference/Assembl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s approv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21 November 194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47 Convention"), to which [name of State] has been a Party since [date] (see also Council Resolution confirming its earlier Resolution193). In particular, [Conference/Assembly] delegates and members of a delegation, and their accompanying spouses and minor children, as applicable, shall, for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for a period of ten days before it begins and five days after it ends, enjoy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established under Article V of the 1947 Convention. In addition, ITU officials and their accompanying spouses and minor children, as applicable, [as well as the [Chairman and the Vice Chairman] [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33) Only applicable to plenipotentiary an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s as well as radio communication assemblies), shall, for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for a period of ten days before it begins and five(5) days after it ends, enjoy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established under Articles and VIII of the 194744) If the inviting Government is not a Party to the 1947 Convention, ITU would accept to apply, by analogy, the provisions of the 1946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 4.3 Observers from the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hall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established under Articles VI and VIII of the 1947 Convention.
- 4.4 Other observers [and the representatives]2) referred to in paragraph 1.1 above shall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with respect to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ny act performed by them in connection with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nference/Assembly].
- 4.5 The staff provided to ITU by the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s and VII of this Agreement and section [3] of Annex to this Agreement shall be plac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Secretary The personnel shall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in respect of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ny act performed by them in their official capacity in connection with the [Conference/Assembly].

주요 내용

제4조: 특권 및 면제

- o 일반규정 166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보, 전화, 팩스, 텔렉스 서비스를 제공
- o 특별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헌장('47.11월 UN총회 승인)에 따라 면제 및 특전혜택 규정에 준한 대상들은 회의 전 10일부터 회의 후 5일까지 특권 및 면제를 누릴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대표단 구성원 및 그들의 동반 배우자 및 아동 자녀 등이 해당
- o ITU의 모든 문서 및 기자재는 불가침의 원칙을 적용받음
- o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기간동안 발생한 수익금을 반출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 없이 출국을 허용
- o 회의 진행을 위한 기자재의 반입 시, 면세를 적용하고 절차상 지연이 없도록 함

키퀴 이묘	3 A 10 O
지침 원문	주요 내용
4.6 ITU, its property and assets, by whomever held, shall enjoy immunity from every form of legal process except insofar as in any particular case it has expressly waived its immunity. It is understood that no waiver of immunity shall extend to any measure of execution. For the purpose of the 1947the [Conference/Assembly] premises referred to in Article II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premises of ITU in the sense of section of the 1947 Convention, and access thereto shall be subject to the authority and control of ITU. The premises shall be inviolable for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including the preparatory and closing stages. The property and assets of ITU, by whomever held, shall be immune from search, requisition, confiscation, expropriation and any other form of interference, whether by execu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legislative action. Furthermore, all documents belonging to ITU or held by it, shall be inviolable.	
4.7 All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out of [name of host State] at the time of their departure, without any restriction, any unexpended portions of the funds they brought into [name of host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Conference/Assembly] and to reconvert any such funds at the rate at which they had originally been converted.55) This paragraph is not required if the [Conference/Assembly] is held in the State with a freely convertible currency.)	
4.8 The Government shall allow the temporary importation, tax-free and duty-free, of all equipment, including technical equipment accompanying representatives of information media, and shall waive import duties and taxes on supplies necessary for the [Conference/Assembly]. It shall issue without delay any necessary import and export permits for this purpose.	
4.9 ITU and the Government shall cooperate at all times to facilitat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secure respect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name of State] and prevent any abuse in connection with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V Financial arrangements

- 5.1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Kyoto,1994), the Government shall defray any additional expense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by reason of the [Conference/Assembly] being held in [place] (see Annex to this Agreement) rather than at ITU headquarters. Such expenses consist in particular,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below, of the following:
- the daily subsistence allowances paid to ITU officials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of ITU and the supplementary service orders issued in connection therewith;
- [the daily subsistence allowances paid to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 Only applicable to plenipotentiary an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as well as radiocommunication assemblies

제5조: 재정협의

- o 결의 5(교토, 1994)에 의거, 개최국은 제네바이외의 지역에서 개최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부가적 비용을 지불하여야함 (Annex 1 참조)
- ITU임직원(사무총장, 사무차장, 전파규칙위원, 및 ITU 직원)에 대한 일비, 총 여비(보험료, 비자 발급비용 등 포함) 및 터미널비

지침 원문

- travel expenses (including any additional insurance premiums) and terminal expenses (including visas if necessary) for ITU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of ITU and the supplementary service orders issued in connection therewith;
- [travel expenses (including any additional insurance premiums) and terminal expenses (including visas if necessary) for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 Only applicable to plenipotentiary an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as well as radiocommunication assemblies
- the cost of transport and insurance charges from ITU headquarters to [name of the Conference Centre] of all equipment, materials and documents necessary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secretariat.

 These expenses shall be recorded in special accounts kept by the General Secretariat of ITU, which shall manage the necessary funds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communicated to it by the Budget

Control Committee of the [Conference/Assembly]. The accounts shall be kept in Swiss francs.

- 5.2 For purposes of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above, two special accounts shall be opened by ITU, one in Geneva and one in [place]. Not later than [date], the Government shall deposit into the special account to be opened by ITU at a bank in Geneva a sum in Swiss francs equivalent to ninety(90) per cent of the estimated expenses referred to in paragraph 5.1 above, as indicated in Annex to this Agreement. The remaining ten(10) per cent shall be deposited not later than [date] in [local currency] in the special account convertible in Swiss francs or United States dollars to be opened by ITU at a bank in [place].
- 5.3 The Government shall also defray expenses relating to any receptions or other events that it organizes in conjunction with the [Conference/Assembly].
- 5.4 Any other expenses incurred by ITU or chargeable to it that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activities of the [Conference/Assembly], including the remuneration of all ITU officials and the repair of any damage or injury done to [Conference/Assembly] premises, persons or property and due to ITU officials'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ITU and shall not be reimbursed by the Government.
- 5.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4 above, ITU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damage, injury or risk to [Conference/Assembly] premises, persons or property.
- 5.6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six(6) months after the close of the [Conference/Assembly], ITU shall prepare for the Government a statement of account indicating the sums paid by the Government to ITU or on behalf of ITU, and the amounts paid by ITU for facilities and services chargeable to the Government. The balance shall be settled in Swiss francs by the Government or by the Union, as the case may be, not later than three(3) months after the statement of account has been received.

주요 내용

- 사무총국 운영 관련 장비, 문서 등 운송비 용 및 보험료 등
- o 상기 비용은 ITU 사무총장이 유지하는 특별 계정에 입금되어, 해당회의의 예산위원회와 논의하에 관리함
- o 개최국은 위의 추산예산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의 개최 전에 제네바 계정에 스위스 프랑화로, 나머지 10%금액은 개최국 현지 계정에 현지화로 예치
- o 개최국은 연회 및 회의와 연계된 모든 부대 행사 비용을 부담
- o ITU 활동과 직접 연관된 비용(ITU직원 보수 및 ITU 직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인한 시설물 혹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은 ITU가 부담하며 개최국이 보상하지 않음
- o 위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 손해 및 상해에 대해서는 ITU가 책임지지 않음
- o 행사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ITU는 개최국이 ITU에 그리고 ITU를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 및 ITU의 시설/서비스 사용 비용 중 개최국에 요청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총 정리한 회계보고서를 개최국에 제출해야 함
- 결산보고 수령 후 3개월 내에 개최국 또는 ITU는 스위스프랑으로 환산하여 결산 완료

지침 원문	주요 내용
-------	-------

Article VI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 6.1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free of charge,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adequate to ensure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in an atmosphere of security and tranquillity free from interference of any kind (see Annex 4 to this Agreement). Security and safety within ITU premises shall be under ITU's control. However,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ITU with security/safety personnel and equipment, at no charge to ITU, which are necessary to ensure the appropriate level of security and safety inside the [Conference/Assembly] premises. Security and safety outside the [Conference/Assembly] premises shall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he perimeters of these two security zones shall be clearly defined by ITU and the Government at the time the premises are handed over to ITU.
- 6.2 As soon as possible, and at least four (4) months prior to the opening date of the [Conference/Assembly], the Government shall designate one (1) senior liaison officer to be in charge of security and safety, who shall work in close collaboration with ITU's Security and Safety Coordinator, to ensure that the security and safety plan is comprehensive and smoothly coordinated.
- 6.3 With the close and continuing collaboration of the Host Country, ITU will produce a confidential [Conference/Assembly] Security Plan. The Security Plan will detail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specific to the [Conference/Assembly], to the participants and to the location. This document will be issued on a need-to-know basis. The first issue will be not later than twelve[12] months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Conference/Assembly]. The document will mature as the [Conference/Assembly] nears, as persons and resources are allocated, and as risks are identified and addressed. Issue of the completed and comprehensive document will be not later than three[3] months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Conference/Assembly].

Article VII Premises, facilities, services and local staff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7.1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ITU, free of charge, with the premises, facilities, services and local staff indicated in Annex 2 to this Agreement, as well as with the IT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services indicated in Annex 3 to this Agreement. If any material, supplies and/or equipment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es not conform to that identified in Annexes 2 and 3 to this Agreement, ITU reserves the right to acquire or rent such material, supplies and/or equipment; any related costs sha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The [Conference/Assembly] premises shall remain at the disposal of ITU 24 hours a day from two (2) week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until a maximum of three (3) days after its closure.

제6조: 보안 및 안전조치

- o 보안 및 안전 관련비용은 개최국이 부담 (Annex 4 참조)
- 개최국은 보안, 안전 요원 및 장비를 ITU에 무상으로 제공
- o 개최국 정부는 늦어도 회의 개최 4개월 전까지 보안 및 안전 담당자 1인을 연락관으로 임명 하여 ITU측 보안 및 안전 실무책임자와 협조 하도록 함
- o ITU는 개최국과 협의하에 보안 및 안전 계획 문서 초안을 행사 시작일 1년 전, 최종본을 3개월 전까지 준비

제7조: 부동산, 시설, 서비스 및 개최국 제공 현지인력

- o 개최국은 ITU에 무상으로 부동산, 시설, 서비스, 현지직원 및 필요한 IT 인프라를 제공 (Annex2, 3 참조)
- o 개최국은 회의참가자를 위해 회의장 인근에 합리적 가격의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장해야 함

지침 원문	주요 내용
7.2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ITU officials and staff provided to ITU by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section [3] of Annex 2 to this Agreement shall have access to the [Conference/Assembly] premises at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including weekends and days that are official public holidays in [place]. Such access may also be extended to other persons, subject to prior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name of State] authorities and ITU. If necessary, the Parties to the present Agreement shall decide on the specific conditions applicable to such access.	
7.3 The materials, equipment, publications and documents belonging to ITU and required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be imported into and exported from [name of State] exempt from all import and customs duties, taxes,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f any kind. The Government shall promptly issue to ITU or its agents all import and export permits necessary for this purpose and shall facilitate, including by giving necessary instructions, any administrative procedure related to such importations and exportations.	
7.4 The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adequate accommodation in hotels or residences close to the [name of the Conference Centre] is available at reasonable commercial rates for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rticle VIII Travel and transport arrangements	제8조: 여행 및 운송 준비
The Secretary General shall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travel of ITU officials [and [Chairman and Vice-Chairman] [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taking part in the work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for the transport to the site of the [Conference/Assembly] of all the materials and equipment required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the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of ITU, the supplementary service orders issued in connection therewith and th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uncil in that regard (see Annex 5 to this Agreement).	o ITU 사무총장은 ITU 임직원의 여행 및 관련 모든 서류 및 장비 운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함(Annex 5 참조)
Article IX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media relations	제9조: 언론홍보
9.1 All official relations with the media (radio and television, electronic media, newspapers and other publications, etc.) with regard to the preparation, conduct and follow of the [Conference/Assembly], as well as all official communication activities undertaken for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retary General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in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미디어 및 기타 모든 미디어 홍보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한 대리인의 권한 및 책임이며 사무총장은 개최국이 지정한 주무관청과 협조하여 진행
9.2 The Secretary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shall exercise thi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e generally followed for other conferences, assemblies and meetings of ITU.	- 단, 주요 사안과 관련된 문제들은 ITU의 온전한 책임이므로 개최국은 ITU 의견에 이의를
9.3 In its relations with the media, the Government agrees not to interfere in matters relating to substantive issues, including the structure or content of the [Conference/Assembly], which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ITU.	제기하지 않음

지침 원문	주요 내용
Article X Cancellation, postponement or change of venue of the [Conference/Assembly] 10.1 In the event of the cancellation, postponement or change of venue of the [Conference/Assembly] as the result of a decision by ITU, ITU's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shall be limited to expenses, whether committed or already paid, in respect of items needed for the organization and prepa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to the extent that such expenses no longer serve any useful purpose and provided that they were essential and cannot be cancelled or reduced. 10.2 If, prior to or during the [Conference/Assembly], the Government is no longer in a position to host the [Conference/Assembly] or permit it to take place on the dates scheduled, or requests that the venue of the [Conference/Assembly] be change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ITU shall be limited to the expenses deriving from that decision, in particular all expenses already committed or paid by ITU in respect of items needed for the [Conference/Assembly], to the extent that such expenses no longer serve any useful purpose and provided that they were essential and cannot be cancelled or reduced. Any expenditure which may be incurred by ITU for the rental of premi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Article II of this Agreement for the hold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shall likewise be defrayed by the Government. 10.3 In the event of a case of force majeure causing or likely to cause the cancellation, postponement, interruption or change of venue of the [Conference/Assembly], the Parties undertake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in five (5) days after the receipt by either of the Parties of written notification that the case of force majeure has occurred, in order to reach agreement on the practical, financial and legal consequences of such case of force majeure. Unless the Parties establish otherwise in writing, such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within seven (7)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negoti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XV below. Shou	제10조: 개최지 취소, 연기 및 변경 o ITU 결정에 의해 개최지가 취소, 연기 및 변경되는 경우 ITU의 비용부담 범위 - 개최국이 이미 진행했거나 지불한 비용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고, 꼭 필요한 비용이 었으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o 회의 개최전/개최중, 개최국이 더 이상 개최가 불가능 하거나 개최지 변경을 신청할 경우 개최국의 비용부담 범위 - ITU가 이미 진행했거나 지불한 비용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고, 꼭 필요한 비용이었으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o 재난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개최국과ITU는 협의하에 결론 도출
Article XI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제11조: 본 협약의 효력
Arrang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agreed between the Secretary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or the liaison officer designated by them.	o 본 협약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위임한 대표와 개최국의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연락관 간의 동의하에 효력이 발생함
Article XII Settlement of disputes	제12조: 분쟁해결
12.1 Subject to paragraph 12.5 below,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Agreement which cannot be settled amicably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or by any other mutually agreed means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 board of three(3) arbitr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ard"). One of the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by the Secretary General, and another by the Government. The two arbitrators thus appointed shall in turn appoint a third	o 본 협약과 관련하여, ITU와 개최국간 협상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넘김

지침 원문	주요 내용
arbitrator to be chairman of the Board. Should either Party fail to appoint its arbitrator within one month after notification by the other Party of the name of its arbitrator, or shoul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fail to appoint a chairman within two months of the second arbitrator being appointed, the arbitrator not yet appointed (or the chairman, as applicable)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위원회는 사무총장과 개최국에서 각기 지명한 중재인 2인과, 두 중재인이 지정한 세 번째 중재인으로 구성 - 위원장: 세 번째 중재인
12.2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French] [Spanish]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Geneva.	
12.3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the Partiesin writing, the Parties agree that the Board shall be free to decide on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and to allocate the costs relating to the arbitration between the Parties.	o 위원회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며 개최국 국내 법정이나 법원에 항소제기 불가
12.4 The Parties to the present Agreement agree that the Board'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m, and that no appeal of the decision may be brought before any national court or tribunal.	
12.5 Any dispute that involves a question governed by the 1947 Convention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section of that Convention.	
Article XIII Liability	제13조: 의무
 13.1 The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any action, claim or other demand brought against ITU or its officials arising out of: a) injury to persons or damage to or loss of property on the premises referred to in Article II above that are provided by or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ther than damage for which ITU is responsible pursuant to paragraph 5.4 above; b) injury to persons or damage to or loss of property caused by, or incurred in using, the transport services referred to in Annex 2 to this Agreement c) the employment for the [Conference/Assembly] of staff provid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present Agreement, including any actions or claims of any kind whatsoever brought by such staff. 13.2 The Government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ITU and its officials in respect of any such action, claim or other demand. 	o 개최국은 다음 항목과 관련하여 ITU 및 ITU 직원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책임보유 - 제5조에 명시된 ITU 책임을 제외, 개최국의 잘못으로 인한 재해 및 인재 - Annex2에 따른 운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된 재해 및 인재 - 개최국이 제공하는 현지직원 고용 관련
Article XIV Use of names, abbreviations, titles, logos and flags	제14조: ITU 명칭, 약어, 타이틀, 로고 및 깃발
14.1 The name, abbreviation, logo and flag of ITU shall be used exclusively by ITU and shall not be used by the Government or by the [Conference/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or its partners or official suppliers, as applicabl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ecretary General or his representative duly authorized to act in the matter.	사용 o ITU 명칭, 약어, 로고 및 깃발은 ITU만이 사용 가능

지침 원문	주요 내용
14.2 ITU shall retain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name, abbreviation, title and logo of the [Conference/Assembly], which may not be used, subject to paragraph below,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ecretary or his representative duly authorized to act in the matter.	- 개최국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대리인의 서한으로 된 공식승인 획득 필요
14.3 The Government shall be authorized to use the name, abbreviation, title and logo of the [Conference/Assembly]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needs, provided that such use does not create the impression that a commercial business, product or service has been endorsed by ITU:	
 a) an information brochure on the [Conference/Assembly] and the homepage for an Internet website set up by the Government for that purpose; b) publications whose text has been approved in advance by ITU; c) publicity materials intended to appear in the local or international media, the content of which has been approved in advance by ITU and whose purpose is to inform potential participants of logistical arrangements for the [Conference/Assembly] and provide them with other relevant information; d) press conferences relating to the [Conference/Assembly] and such other events as may be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14.4 The Government shall keep ITU regularly informed concerning any use it makes of the name, abbreviation, title or logo in the context of paragraph above. It may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fraudulent use of the [Conference/Assembly] name, abbreviation, title or logo by an unauthorized third party. 	
Article XV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제15조: 협약의 변경 및 종료
The present Agreement, including its Annexes 1 to 5 which form an integral part thereof, may not be modified or terminated except by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Secretary General. Any mod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an integral part of the present Agreement.	o 본 협약(Annex 포함)의 변경 및 종료를 위 해서는 ITU 사무총장과 개최국간의 서한으로 작성된 협약 필요
Article XVI Entry into force and dur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제16조: 협약의 효력 개시일 및 기간
16.1 The present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signature by both Parties.16.2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remain applicable until the final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of all organizational, financial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Conference/Assembly].	o 본 협약은 ITU와 개최국이 동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

Amounts in thousands of Swiss francs

(단위: 1,000 스위스프랑)

	Specific expenses of the conference / assembly if held in Geneva	Specific expenses of the conference / assembly if held outside Geneva	Additional expenses to be borne by the Host Administrati on
1 Staff expenses			
1.1 Salaries for interpreters			
1.2 Support staff			
1.3 Provision for overtime			
Subtotal			
2 Travel and subsistence allowance expenses			
2.1 ITU staff (pre-conference/assembly travel)			
2.2 ITU staff(conference/assembly)			
2.3 Interpreters			
2.4 RRB members			
Subtotal			
3 Other expenses			
3.1 Transport and freight expenses			
3.2 Provision for miscellaneous and unforeseen			
Subtotal			
TOTAL			

	제네바에서 개최시 비용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 개최시 비용	
1 직원 비용			
1.1 통역사 임금			
1.2 지원 직원			
1.3 추가근무수당 제공 소계			
조계			
2 출장 및 관련 경비			
2.1 ITU 직원(회의 이전 출장)			
2.2 ITU 직원(회의)			
2.3 통역사			
2.4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소계			
3 기타 비용			
3.1 운송 및 화물비			
3.2 기타			
소계			
총합			

o Annex 1 보충설명

지침 원문 1. Staff expenses: 1. Salaries for interpreters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interpreters required for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the rates applicable at the place where the Conference/Assembly is held. Any additional costs are to b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 2. 모든 부가비용은 개최국에서 부담

- 1.2 The expenses for support staff requirements incurred due to the Conference/Assembly being held outside Geneva are to b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
- 1.3 A provision for overtime is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Staff Rules and Staff Regulations of ITU.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over and above the corresponding amount budgeted for holding the Conference/Assembly at ITU headquarters are to b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

2. Travel and subsistence allowance expenses:

- 2.1 Travel and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expenses of ITU officials travelling to the host country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and plan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are to b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
- 2.2 Travel and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expenses for ITU staff are to b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 These include terminal expenses and repatriation insurance that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ITU staff by application of a lump-sum amount for the terminal expenses (Section II of Annex 5 refers) and of a daily rate for the repatriation insurance. The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staff for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including days of travel, and the rates applicable (Section III of Annex 5 refers).
- 2.3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by holding the Conference/Assembly outside Geneva with regard to travel and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expenses for interpreters ar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 These include terminal expenses and repatriation insurance that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interpreters, by application of a lump-sum amount for the terminal expenses (Section II of Annex 5 refers) and of a daily rate for the repatriation insurance. The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is

- o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개최 시 필요한 직원 비용은 개최국에서 부담
- o 시간외 근무 수당은 ITU 직원규정 및 규제 조항을 따름
- ITU 본부에서 회의개최 시 지출되는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개최국에서 부담

2. 여행 및 출장비

- o ITU 임원(officials)이 회의 준비 및 계획수립을 위해 개최국을 방문할 경우, 개최국은 여행비 및 일비 (DSA) 부담
- o ITU 직원(staff)의 여행비 및 일비는 개최국에서 부담
- 터미널비, 본국송환 보험료 등 포함
- ITU 직원수에 일괄적으로 지출되는 터미널비(Annex 5 Section II) 및 일일 송환보험률을 적용하여 계산
- 일비는 직원수, 여행일수, 회의기간 및 일비율(Annex 5 Section III)에 따라 계산
- o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 개최 시 발생하는 통역사의 추가적 여행비 및 일비 또한 개최국에서 부담
 - 계산 방법은 상동
- o 전파규칙위원회 위원의 경우, 전파통신부문 컨퍼런스 개최 시에는 12인 모두의 여행보험 및 일비가 제공되며,

지침 원문	주요 내용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interpreters for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Assembly, including days of travel, and the rates applicable (Section III of Annex 5 refers). 2.4 Travel insurance and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expenses for the twelve (12) 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RRB) are covered in the case of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Travel insurance and DSA expenses for two (2) members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are covered in the case of plenipotentiary conferences and radiocommunication assemblies. The Host Government covers the additional expenses due to the Conference/Assembly being held outside Geneva, based on the number of days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the days of travel.	전권회의 또는 전파통신부문 총회 개최 시 전파규칙 위원회 2인의 여행보험 및 일비가 제공됨 -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 개최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의기간과 여행기간에 따라 개최국에서 부담
3. Other expenses:	3. 기타 비용
 3.1 Transport, insurance and dispatch/freight expenses for equipment, material and documents from Geneva to the place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return are to be reimbursed to ITU. 3.2 A provision is made for miscellaneous and unforeseen expenses. Additional expenses due to the Conference/Assembly being held outside Geneva over and above the corresponding amount budgeted for holding the Conference/Assembly at ITU headquarters are to b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 	 이 개최국은 제네바로부터 회의 개최지까지 설비, 자료 및 문서 운송으로 인한 운송비용 및 관련 보험료를 ITU에 상환해야 함 -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 개최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전예측을 못한 기타 비용도 부담

rows of chairs for the main meeting room only) for the participants.

projector, PC, laptop connection, 2 printers, scanner).

- To be built at the back of the room for the elections during PP conference (tables, chairs, screen,

Green room

지침 원문							주요 내용		
The Government sha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make available to ITU, free of charge, the following premises, facilities, services and local staff, as necessary, and in a manner that ITU considers adequate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o 개최국이 다음과 같은 시설, 서비스 및 현지 진행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1. Premises ¹⁾							1. 부동산		
Conference room	ns								
A certain number of conference rooms with different capacities are requested. The figures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event. The agenda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the place where it will be held will have an impact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Requirements for the major conferences/assemblies: (PP)						o 회의장 - 2,000명, 800명, 500명, 300명 수용 규모의 회의장 각 1개씩, 100명, 50명 수용 규모의 회의장 각 4개씩, 25/30명 수용 규모의 컴퓨터실 1개			
Main Room	Second Rm.	Meeting Rm.	Meeting Rm.	Meeting Rm.	Meeting Rm.	Meeting Rm.	- 본회의장은 헤드테이블, 참가자석, 그린룸, 기술 장비, IT장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회의장은 크게 헤드테이블과 참가자석으로 구성		
~2000 persons	~800 persons	~500 persons	~300 persons	4 x ~100 pers.	4 x ~50 pers.	Edit. Com. ~25/30 pers.			
 The main meeting rooms, which are mentioned in bold in the table above, have to be equipped with Head table A head table (desk-type) with ten/twelve (10/12) places plus an additional row of chairs behind for the secretariat and a table. A backdrop whose colour scheme will correspond to that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will be suitable for camera (TV or still camera); the design is subject to approval by ITU. When required, a large table for précis-writers, with three (3) chairs. A lectern with one (1) mobile microphone. Participants - Meeting room configuration 					- 교실식 구조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본회의장의 경우 참가자석 배치가 책상 1줄과 의자 2줄씩 병렬 가능 - 회의장 중 하나는 회의 개최전/종료일에 열리는 기자 회견장으로 이용되며, U자 형으로 배치 되어야함 - 모든 회의장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준비가 완료 되어야 함				
- One (1) row of tables (desk type) and one (1) row of chairs (or one(1) row of tables and two(2)									

지침 원문	주요 내용
Technical requirements	
- One (1) microphone for each person seated at the head table.	
- One (1) microphone for every two(2) participants seated at table.	
- A set of headphones for each participant, including those seated at the head table and for the précis-writers.	
- A sound system with booths and installations for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ISO Standards,	
in at least six(6) languages. Four(4) booths with two(2) places each and two(2) booths with three(3) places each.	
- Triple recording of the meetings: two(2) copies of the floor and one(1) copy of the English channel, with recording of speakers log.	
- An electronic name-handling system to request the floor with options for voting system and calculation of quorum (system + control screen at the head table).	
- Multibox, Mixers with XLR connections for audio take up for the journalists in the main meeting room.	
IT requirements	
- Wireless LAN with Internet access for all the participants.	
- Wired Fast Ethernet LAN allowing participants to connect their laptop to the Internet by wire if desired. One in every two (2) seats at table, including the head table.	
- Power plugs for laptops (one (1) per seat).	
- Big screens, clearly visible to all the participants and additional screens on the podium for those seating at the head table.	
- One(1) PC or laptop for projections, US keyboard (Microsoft Word and PowerPoint, diskette, CD-ROM drivers and USB ports).	
- One(1) overhead projector, latest model used in Geneva, with direct wired, wireless connection to the computers.	
- One(1) printer behind the head table.	
- A video system (including both camera and personnel) for projecting an image of the speaker on the screens in the room, a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of the room. The system should also allow the possibility of inserting the name of the speaker on the bottom of the screens.	
- Audio and video webcast of the debates in six (6) languages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Spanish) plus floor, i.e. a total of seven (7) channels.	
- Transmission of the audio (floor $+ A/C/E/F/R/S$) and video signal(s) from the meeting room to the webcast centre, where the encoders will be installed, otherwise a secured booth for the webcast encoders and workspace for two (2) persons are requested close to the interpretation booths.	

지침 원문	주요 내용
The other meeting rooms have to be equipped with:	
- A head table with six (6) seats.	
- One (1) row of tables and one (1) row of chairs for the participants.	
- One (1) microphone for each person seated at the head table.	
- One (1) microphone for every two (2) participants seated at table.	
- Wireless LAN with Internet access for all the participants.	
- Wired Fast Ethernet LAN allowing participants to connect their laptop to the Internet by wire if desired. One (1) in every two (2) seats at table.	
- Power plugs for laptops (one (1) per seat).	
- Big screens, clearly visible to all the participants and those seated at the head table.	
- One (1) PC or laptop projections, US keyboard (Microsoft Word and PowerPoint, diskette, CD-ROM drivers and USB ports).	
- One (1) overhead projector (XGA/SVGA Data) with direct connection to the computer.	
- One (1) printer behind the head table.	
One of these rooms will be used for press conferences (one tentatively scheduled for the day prior to the opening and one on the closing day) with the following additional needs:	
- U shape.	
- A sound system with booths and installations for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ISO Standards, in two (2) languages.	
- Double recording of the meetings: floor and English channel.	
- The ability to have an audio/video system (including both camera and personnel) along with the webcast option.	
- A teleconference facility to enable journalists covering the Conference/Assembly off-site to take part in the press conference.	
- Multibox, mixers with XLR connections for audio take up.	
- A backdrop.	
Water carafes and glasses shall be available at each head table, in the interpretation booths and at the entrance of each room.	
All the conference rooms have to be fully operational two(2) day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지침 원문	주요 내용
Offices	o 사무실
Offices for the Chairman of the Conference/Assembly, chairmen and secretaries of committees, for the elected officials [and newly elected officials only for PPs] of ITU and their secretariats. Each of them should have their own office with natural light.	- 회의의장, 위원회 의장 및 간사, ITU 선출직(신규 선출직 포함) 및 간사에게 자연광이 드는 개인 사무실을 제공해야 함
Offices for the ITU staff and the local staff. It is recommended to have natural light in all the offices. The number of offices depends on the staffing table and on the configuration of the Convention Centre.	- ITU직원 및 현지직원용 사무실도 자연광이 드는 사무실 권고
For the furniture/equipment, a table of requirements will be prepared in due time with the number of desks, lamp desk, bins, chairs/armchairs with wheels, visitors chairs, tables, open shelves, big and small cupboards with key, VIPs' furniture, telephones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access, answering machines/voice mails, faxes, mobile phones, photocopying machines, flip charts, PCs, keyboards, laptop connections, printers, scanners, screens, projectors, plasma screens, etc. The quantities depend on the staffing table and on the configuration of the Convention Centre.	
Water fountains will be made available close to the offices.	
Availability and operability: two (2) week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having in mind that the basic network infrastructure connected to power backed up by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shall be ready prior to the arrival of the first ITU staff (which is two (2) week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Areas	
For the ITU Staff	
- Technical rooms/wiring closets for servers and network equipment with adequate air conditioning and electrical supply backed up by UPS.	
- Room for PC and printers preparation before the Conference/Assembly	
- Distribution of documents: huge office for the staff and storage area for documents collection close to the pigeons-holes.	
- Reproduction of documents with adequate air-conditioning and equipment (high speed material with recto/verso, collating and stapling capabilities, plus "Purple-LAN" connectivity, see Annex 3).	
- Press area: ITU staff plus journalists.	
- Interpreters' lounge.	
Communication (Transport	I and the second

- Storage area for empty boxes and metal cases (ITU dispatch).

지침 원문	주요 내용
For the Host Country Host Country area. Organizing Committee area. For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reception and registration. Bookshop. TV studio. Pigeon-holes for the documents. Cybercafé (see Annex 3, para.9). Cabinets with lockers for laptops/personnel effects. General information desk. Flight reconfirmation desk. Bank. Telecommunication centre. Coffee break area (at regular commercial prices). Cafeteria (at regular commercial prices). Gift distribution desk with storage area (for PP conference). VIP room (for PP conference).	
- Prayer rooms. Water fountains will be made available close to these areas.	
For the furniture/equipment, <i>a table of requirements</i> will be prepared in due time as described above. Availability and operability: Most of these areas have to be available two (2) week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having in mind that the basic network infrastructure connected to power backed up by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shall be ready prior to the arrival of the first ITU staff (which is two (2) week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2. Facilities/services IT requirements: please refer to Annex 3. Air-conditioning (or heating) at a constant temperature of twenty (20) degrees Celsius, lighting, water and clea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premises described above. First aid facilities within the Conference Centre; for emergency services, the Government shall 	2. 설비/서비스 o IT장비: Annex 3 참조

지침 원문	주요 내용
ensure immediate transportation and admission to a hospital. Public audio system to make announcements. Large flat screens for announcement of the meetings, press and TV studio. A service for the reservation of hotel rooms, with provision for the possibility that reservations may be changed for ITU officials. This service shall be available also to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t reasonable commercial rates. It is understood that such reservations shall not entail any liability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or ITU. Concerning the rates for the ITU staff, please refer to the daily subsistence allowances (Annex 5). For the participants, a selection of different categories of hotels has to be offered, from 2* through 5*. Hotels should offer Internet connectivity. Internet connectivity must be included in price of accommodations for ITU staff. A Travel Agent, with a temporary office in the Conference Centre with functions to include reconfirming, rerouting and issuing air tickets. Information services for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t the Convention Centre. Reception desk for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nd participating ITU officials at the airport(s). Cars and drivers will be provided upon arrival at the airport and will be available until departure for the five (5) elected officials. Transport for ITU staff upon arrival from the airport to the hotels and, at the end of the Conference/Assembly, from the hotels to the airport. During the Conference/Assembly, from the hotels will be provided and back to the airport at the end of the Conference/Assembly. During the Conference/Assembly, shuttles will be organized from the official hotels to the Conference/Assembly, shuttles will be organized from the official languages, containing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area, available in sufficient copies for all Conference/Assembly	
participants and ITU officials. 3. Staff	3. 직원
A staffing table will be prepared in due time for the staff to be detached from ITU, for the interpreters and for the local staff.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Conference/Assembly with local staff (including security staff), at no cost to ITU,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specified in the staffing table to be agreed by the Parties. The number of staff involved will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event:	o 적당한 때에 ITU 파견직원, 통역사 및 현지직원 관련 인력표(staffing table)가 준비되어야 함 o 개최국은 현지직원(보안직원 포함)을 ITU에 무상 으로 제공하여야 함

지침 원문	주요 내용
 from 100 through 300 persons for the staff to be detached from ITU, including interpreters, from 30 through 100 for the local staff (secretariat, ushers for the meeting rooms, messengers, assistants for the documents distribution, IT staff), the number of technicians and operators for document reproduc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volume of documentation and is part of the contract with the service provider, the number of technicians and operators in the meeting rooms var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meeting rooms, the local security staff depends on the venue of the Conference/Assembly and the Conference/Assembly site. 	o 행사에 따라 필요한 직원 수는 다양함 - ITU 파견: 100~300명(통역사 포함) - 현지 직원: 30~100명 - 문서생산을 위한 다수의 기술자 및 운영자 - 회의장 운영을 위한 다수의 기술자 및 운영자 - 현지 보안직원
4. Host Committee	4. 개최 위원회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ITU with a list of names, titles, func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of all the persons constituting the Host Committee nine (9) months before the Conference/Assembly. This list shall include details of all bodies and authorities in all relevant areas of activ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ce, security, media, protocol, visas, customs, transportation, hotels, logistics, IT part.	o 개최국은 ITU에 회의개최 9개월 전, 모든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ANNEX 3> IT 요구사항

o 개최국이 제공해야 하는 IT 장비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이 명시: IT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회의 2년 전마다 수정 예정

<ANNEX 4> 보안 및 안전

o 보안 및 안전문제 관련 개최국의 의무사항 명시

¹⁾ At ITU headquarters, a strict no-smoking policy is observed. Although the inviting government's own policy in this regard shall prevail, ITU expresses a preference for a no-smoking policy for its conferences and assemblies held away from headquarters, particularly in the meeting rooms.

<ANNEX 5> 여행 준비

지침 원문	주요 내용
 1.1 As referred to in Article VIII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xx] and ITU, travel of ITU officials taking part in the work of the Conference/Assembly is 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of ITU, the supplementary service orders issued in connection therewith and th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uncil in this regard. 1.2 In this regard, staff members are entitled to: - transportation expenses; 	o 협약 제8조와 관련, ITU 임직원의 여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o ITU 임직원은 다음항목에 대한 수혜자격 보유 - 교통비 - 터미널비
 terminal expenses; travel subsistence allowance; rest days during or after travel, depending on its duration; necessary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during travel, if any. 	- 출장경비 - 여행기간에 따른 여행중/여행후 휴식일 - 기타 여행중 추가적으로 발생된 필요경비
I. Transportation expenses	I. 교통비
1.3 The normal route for all official travel shall be the most direct and economical route. The normal mode of transportation for all official travel shall be by air. An alternative mode of transportation may be approved when,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General, its use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on.1.4 All official travel shall be by air in economy class.	o ITU 임직원의 모든 공식 여정은 항공편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경로를 이용
1.5 However, staff members may travel by air at the class immediately below first class when traveling whenever: - the duration of the journey is nine (9) hours or longer; - for round-trip travel, the duration of either journey is nine (9) hours or more,	o 이코노미석을 원칙으로 하나 개최국까지의 비행시간이 편도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등석 바로 이하 석으로 제공
the duration of a particular journey being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ombined flying time of all legs of the journey to a given destination by the most direct and economical route available, including transit up to a maximum of four (4) hours of scheduled waiting times. It excludes travel time to and from airports. These special conditions may not apply when the Union makes group	- 수화물 무게는 최대 30kg까지 초과 탑재 가능하며, 해당 비용은 추후 상환됨 o ITU 선출직에게는 일등석이 제공되어야 함
or special tariff travel arrangements for missions or conferences. 1.6 Elected officials are entitled to first-class accommodation when travelling by air.	- 일등석을 이용하지 않는 선출직의 경우, 수하물 초과비용 발생 시 일등석에 준하는
1.7 Staff members may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of excess baggage up to a maximum of [30] kg beyond the limitation prescribed the transportation companies. Elected officials travelling by a class other than first class are entitled to payment for excess baggage to bring their baggage entitlement to the amount allowed for first-class air travel.	수화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초과비용을 지원

지침 원문	주요 내용
II. Terminal expenses	II. 터미널비
1.8 The amounts of the terminal expenses paid to staff members in respect of official travel, for each transfer between the airport or any other point of arrival or departure and the hotel or any other place of residence, are as follows:	o ITU 임직원이 공무수행 상 여행 시, 공항 간, 또는 출발지/도착지과 숙박시설 간 이동 시 터미널비가 매 환승시 지불
For all destinations, except New York: USD [30]	- 뉴욕은 USD 50, 이외 지역은 USD 30
For New York: USD [50]	- 출국 전 총액으로 제공
1.9 These amounts are reduced if transportation is provided free of charge by the Host Country.	
1.10 These terminal expenses are paid to staff members in advance of their departure in the form of a lump sum.	o 개최국에서 교통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III. Travel subsistence allowance	III. 여행경비
1.11 Staff members receive an appropriate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which may vary from area to area and with salary level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United Nations schedule of rates. The DSA schedule is updated monthly by the United Nations.	o ITU 직원은 UN지정 요율에 따라 일비를 지급받음
1.12 When lodging is provided free of charge by a government or by a company or other body, the standard rate is reduced by fifty percent (50%).	- 숙박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표준 비율이 50% 감면됨
1.13 The DSA rates appearing in the United Nations schedule shall apply to the travel of staff in grades P.5 and below.	- UN지정 요율은 P.5이하 직원에게만 적용
1.14 The rates for elected officials will be forty percent (40%) (rounded to the nearest US dollar) above the normal rates.	- 선출직은 요율에서 지정된 금액의 140%를 제공 - 수석자문단 범주에 속하는 직원(D1, D2)의 경우, 일정중 첫 60일간은 요율에서 지정된
1.15 The rates for the first sixty 60 days for staff in the Senior Counsellors category (D1 and D2) shall be fifteen percent (15%) above the published rates (rounded to the nearest US dollar).	금액의 115%를 제공
IV. Rest days during travel, depending on its duration	IV. 여행중/여행후 휴식일
1.16 When a staff member travels at the Union's expense, by air or mainly by air:	
i) if the scheduled or actual flight time for the journey is between six (6) and ten (10) hours, he/she will not normally be required to commence duty within 12 hours of arriving at his destination;	o ITU 직원이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경우, - 비행시간이 6~10시간인 경우, 개최지 도착 후 12시간 동안은 업무 개시의 의무가 없음
ii) if the scheduled or actual flight time is more than ten (10) hours but not more than sixteen	- 비행시간이 10~16시간인 경우 도착 후 24시간

지침 원문	주요 내용
(16) hours, he/she will not normally be required to commence duty within twenty-four (24) hours of arriving at his destination. Alternatively, the Union may decide to grant a stopover not exceeding twenty-four (24) hours. If the final stage of the journey exceeds six (6) hours, the official will not normally be required to commence duty within twelve (12) hours of arrival;	- 비행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24시간미 마의 휴게기(stopover) 2회 또는 휴게기 1
iii) if the scheduled or actual flight time of the journey exceeds sixteen (16) hours, the Union may allow either two stopovers, neither of which shall exceed twenty-four (24) hours or one stopover with a rest period not exceeding 24 hours on arrival at the destination.	o 일비는 단기 휴식기, 휴게기를 포함한 총 여행 기간에 대하여 지급됨
1.17 DSA is paid for the whole period of travel, including rest periods and stopovers.	
V. Necessary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during travel	V. 여행중 추가 필요경비
1.18 Necessary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by a staff member in connection with official business or in the performance of authorized travel may be reimbursed by the Union after completion of travel, provided the necessity and nature of the expenses are satisfactorily explained and supported by proper receipts, which shall normally be required for any expenditure in excess of USD [6].	o ITU 직원의 공무 상 추가발생 비용이 USD 6을 초과 할 경우, ITU는 해당 액수를 상환
VI. Particular restrictions	VI. 특별 제한
1.19 For security reasons,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Deputy-General are not allowed to travel on the same flights or to use the same mode of transportation on the same date and hour.	o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한 비행기에 동승 및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교통편 이용하면 안 됨
1.20 The number of staff members traveling on the same flight or using the same mode of transportation is limited to a maximum of thirty (30) people.	o ITU 직원은 한 비행기 또는 동일한 교통편 탑승 시 동승인원은 30명을 초과하면 안 됨
VII. Ticket issuance	VII. 티켓 발행
1.21 Due to the high number of tickets for transportation to be issued during a limited period of time, as well as recurring modifications to be handled (changes in the staffing table, modification of travel dates, cancellations, etc.), issuance of tickets shall be made at ITU headquarters by the on-site travel agency, taking into account special negotiated fares, if any.	o 항공권은 ITU 본부에서 현지 에이전시를 이용 하여 발급

o ANNEX B(보충설명):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의 회의 개최 절차

지침 원문	주요 내용
1. Types of conferences/assemblies held outside headquarters World conferences/assemblies of ITU are held outside headquarters when there is a suitable proposal from an inviting government.	1. ITU본부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o 개최희망 정부의 제안이 적절한 경우, ITU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 가능
 2. Procedure a) The inviting government should send a formal letter to the ITU Secretary-General confirming its desire to invite a conference/assembly and request that the secretariat undertake an exploratory mission, specifying: the objectives of the mission; the duration of the mission; confirma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bear all the costs related to the mission. b) The Secretary-General will reply formally that ITU will follow up on this request according to its procedur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c) Once an official invitation is received, the secretariat sets out the requirements and conducts further site visits to ensure that the necessary facilities are available, and a negotiation process is conducted culminating in a formal agreement between the host government and ITU. 	 2. 절차 o 개최희망 정부는 ITU 사무총장에게 정식 서한을 통해 개최희망 의사를 전달, ITU사무총국에는 회의개최 관련 세부사항(회의 목적, 기간, 비용부담 확인 등)을 요청 o 사무총장은 제안국 요청과 관련, 정해진 절차 및 관련 헌장/협약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응답 o ITU 사무총국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개최국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수행하며 및 개최 국과 ITU 간 공식 협정을 위한 협의 개시
3. Decision The decision on the place and dates of a conference/assembly is taken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or when this is not possible by ITU Council on the basis of a formal consultation of the membership (See Nos. 2, 41 and 42 of the ITU Convention).	3. 결정 o 개최지 및 기간은 전권회의에서 결정 - 불가능한 경우, 회원국의 공식 자문을 토대로 ITU이사회에서 결정

	지침 원문			주요 내용
4. Invitation letter				4. 초청장
The invitation letter should be ser	at to the participants or	ne year before the conf	erence/assembly.	o 회의 개최 1년 전, 참가자에게 초청장 발송
5.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by holding the conference assembly outside Geneva The financial arrangements to be applied in connection with the holding of conferences/assemblies outside ITU headquarters in Geneva are stipulated in Article V of the host-country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5(Kyoto, 1994)			 5. 제네바 이외 지역에서 회의 개최 시 추가 발생 비용 o HCA 제5조에 따라 개최국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the host government shall defray an additional expense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by reason of the conference/assembl being held away from Geneva.				
Annex 1 to the host-country agreethe additional expenditure to be expressed in thousands of Swissubsistence allowance, are conversations operational exchange rate	borne by the host governments. United State ted into Swiss francs	vernment. The figures s dollar amounts, suc	in Annex 1 are ch as the daily	
6. Staffing table				6. 인력표
A staffing table will be prepared in due time for the staff to be detached from ITU, for the interpreters and for the all the local staff. Reference to the staffing table is made in Annex 2 to the host-country agreement, under "3. Staff".		o 회의 개최에 앞서 ITU 파견 직원, 통역사, 현지직원 수를 확정한 인력표 작성 (Annex 2의 3 참조)		
For information, as a guide (recognizing that requirements will vary according to circumstances and with time) please find below the number of staff deployed for the most recent conferences/assemblies held outside Geneva.		o PP-06 예시 - ITU 파견직원(통역사 포함): 229명 - 현지직원(IT스텝 포함): 70명		
PP-06 229 ITU staff 70 local state including interpreters staff	ff Plus local operators & technicians for meeting rooms	Plus local operators & technicians for document reproduction	Plus local security staff	- 회의장 운영 및 문서생산 관련 현지 기술자 및 운영자 - 현지 보안직원 등

지침 원문

7. ICT facilities

The network at ITU headquarters consists of an internal network for ITU users and an external network for participants attending ITU conferences/assemblies. When the event is held outside ITU, a similar network environment has to be established at the remote conference site in order for the ITU staff and participants to work as if the conference/assembly were held at ITU headquarters in Geneva. In Annex 3 to the host-country agreement, the internal network is referred to as the "Purple-LAN" and the external network is referred as the "Orange-LAN".

With the rapid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ICT, most work has been computerized and in practice ITU conferences/assemblies can no longer be held without a robust and secure ICT infrastructure. ITU sees an increasing demand for 'paperless' meetings, where participants retrieve documents interactively from the ITU website. The ICT infrastructure at ITU headquarters has been designed with these requirements in mind, and the same requirements are extended to the infrastructure at the remote conference site. These requirements are reflected in Annex 3 to the host-country agreement.

Furthermore, as ITU support staff needs to be on site in advance preparing for the conference/assembly, the Purple-LAN has to be fully functional nine (9) day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while the Orange-LAN has to be fully functional two (2) days before the opening of the conference/assembly, when participants begin to ar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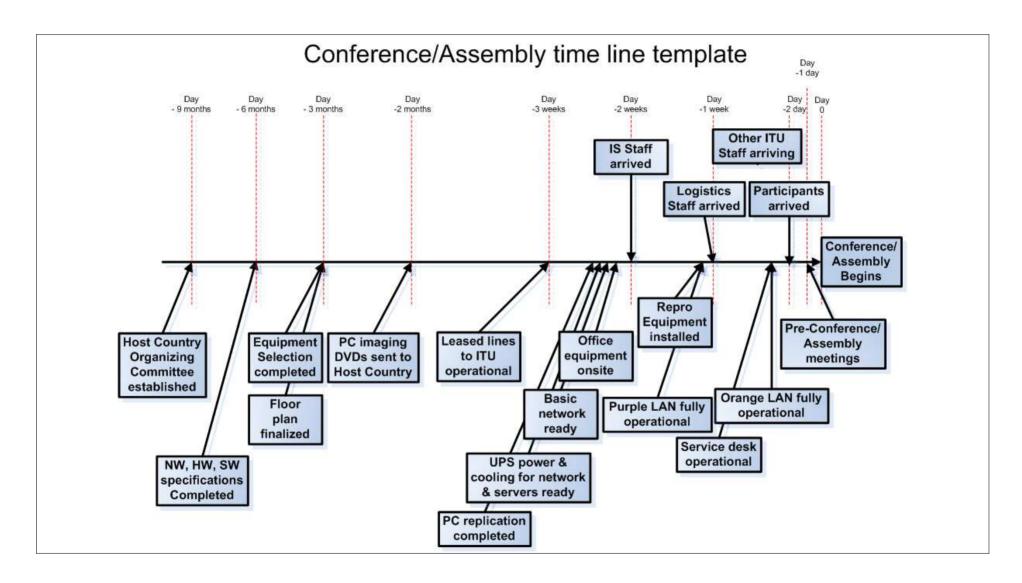
7. ICT 시설

o ITU 본부의 네트워크는 ITU 이용자를 위한 내부 네트워크(Purple-LAN) 및 ITU 회의 참석자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Orange-LAN)로 구성 (Annex 3 참조)

주요 내용

- 제네바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ITU 본부와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필요
- o ITU 지원 직원은 회의 9일 전까지 내부 네트 워크를 설치하여야 하고, 회의 2일 전까지 외부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해야 함

8. Conference/assembly timeline template (회의 스케줄 템플릿)



제19차 ITU 전권회의 유치 필요성,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no.	의견 개요
1	○ 타국의 유치 사유 관련 - 해당국의 외교기조, ITU의 적극적인 설득, 해당국 대내적 정치적 목적 등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 ※ KISDI 타당성조사 보고서 p60, 기존 개최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정책적 파급효과 참조
	 기최 도시 관련: 정부와 도시간 관련 내용은 개별국가의 내부 정보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국가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강하거나 연방제인 경우는 그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고, 중앙집권적인 경우는 중앙정부 입장이 강할 것임 모로코 마라케시의 경우, WTO를 개최한 도시로, 시설 및 경험면에서 수도보다 유리하였을 것으로 여겨짐 터키의 경우, 보안상의 문제 및 지방활성화 등을 사유로 안탈랴에서 개최하였을 것으로 추정 ※ 이스탄불에서 WTDC, WRC를 연속으로 개최하였으나, 당시 보안 관련 회원국의 항의가 많았음
2	○ 유치 필요성: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스터디그룹 등만을 위주로 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총회 등은 개최한 적이 없는 바, 국가 위상제고를 위해 ITU PP 유치가 필요하다 사료 - 의장직을 수행하여 전권회의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 가능 - 10년전부터 ITU로부터 WTSA 등 유치 건의는 있었으나 우리나라 측 의지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황 - 경제적으로 ITU 사무총국 초청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나, 연회개최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참가국의 연회개최 수요가 매우 높은 바, 연회개최 희망국을 선착순으로 받아 연회를 개최함
	이 기존 전권회의의 경우, 전시회, 포럼 등 연계행사는 거의 개최하지 않았음- 전권회의장 인근에서 유관행사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
	 유치 절차: 유치희망 의사를 사무총국장/의장에게 개별적으로 밝히면, 이를 사무총국측에서 공식 문서로 만들어 회원국에게 알림 차후 한국측에서 공식문서 송부 필요 이제까지 경쟁국이 있는 경우를 못 보았으나, 있을 경우에는 사무총국과 내부조율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사료

no.	의견 개요
3	 ○ 기존 전권회의 경우 연계행사 사례가 많지 않았음 - PP 기간중에는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석해야 됨으로 연계행사에 참여가 어려운 바, PP 개최 직전, 기간중 식사시간, 주말 등을 활용하여 연계행사가 개최됨 - 국내업체가 스폰서로 참여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자사 서비스 및 제품 홍보 가능 - 98년 미네아폴리스의 경우, PP개최 전일 wireless information session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삼성에서 스폰서 이벤트로식사를 제공하며 글로벌로밍폰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례가 있음 ○ PP유치와 선출직 진출 관련, 주최국 home advantage가 상당하다 볼 수 있음 - 일본 우쯔미 사무총장의 경우, 기존에 ITU에서 활동한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 교토 전권회의에서 의장직을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전권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음 - 터키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권회의 주최국이 PP개최를 바탕으로 선출직 진출에 성공하였음 ※ 터키의 경우, 경쟁후보자인 중국측이 ITU내 입지가 매우 강력하여 낙선됨
	 ○ 유치 과정중, 경쟁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총국과 양국간 내부조율을 통해 결정됨 - 내부조율 과정 중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나, 공식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례는 없었음 ○ 종합 의견 - 한국은 IT강국이며, ITU이사국임에도 불구 ITU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은 바, ITU 전권회의 유치 등을 통하여 세계 시장에서 IT강국으로의 한국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키고, 표준화 등 IT관련 주요 정책 및 전략수립에 있어 적극적으로 한국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또한, ITU 전권회의와 같이 국내 IT기업들이 국내에서 191개국 정책입안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임
4	 ○ 경제적 이익: 국가 전체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될 것임 - 개도국들의 경우,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여 PP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판단 - 터키의 경우, WRC 유치시 신규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느라 큰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후 당 시설물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창출하고자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no.	의견 개요
5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산업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및 계획이 필요 전권회의 참석자는 해당국 IT산업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은 바, 전시회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 및 우수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적은 투입으로 거대한 홍보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임 단, 산업체는 단순히 정부지원차원에서 참여가 아닌, 자사의 글로벌 시장진출 계획에 맞춰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및 계획이 필요
	O 선출직 진출: 전권회의 개최는 분명 선출직 진출 등에 도움이 됨 (단, 계획적 접근 필요) - 전권회의 의장 결정 시, 해당인사를 ITU 어떠한 직위에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지 분명한 계획 필요 - 일본은 ITU 선출직에 진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PP를 유치한 것으로 판단
	o 전권회의 유치 경쟁: 미국, 터키 전권회의 당시 유치경쟁이 없었음 - 사무총국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발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음
6	o 전권회의 유치와 국위선양 - ITU 공식문서에 개최지(예: 서울)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ITU역사로 길이길이 남을 것임
	 O 선출직 진출: 도움이 되긴 하나, 차기 선거일정 등을 고려 필요 - 일반적으로 선거개최년도에는 개최국은 선거에 출마 안하였으며, 터키가 전례를 깨고 사무차장으로 진출하였으나,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져 낙선하였음 - 한국의 경우, 전문직 양성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2014년에 선출직으로 진출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할 경우 연임을 고려하면 8년 후인 2022년에 주요직 선거가 예정되는 바, 2014년이 아닌 2018년에 유치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선출직 진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성계획 필요: 목표직, 홍보방법, 양성 절차 등
	ㅇ 종합의견 - ITU 전권회의 유치는 경제적 효과 이전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no.	의견 개요
7	 이 유치 필요성 관련: 국가위상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공통적으로 고려하여 유치한 것으로 사료(단, 효과별로 관심을 두는 비중은 상이할 것임) - ITU 및 전권회의의 세계 전기통신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역대 전권회의 유치국들이 관심을 가 졌던 효과는 공통적으로 자국의 관련 정책분야에서의 위상 제고가 가장 중요한 요인과 효과였을 것으로 판단 - 이와 함께 자국 전기통신산업의 활성화 및 대규모 대표단의 참석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현실적으로 회의 유치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일 것으로 판단 - 다만, 이러한 효과들은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에 확산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바, KISDI 보고서에 기술된 효과는 대부분 역대 전권회의 유치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주요 요소들로 판단
	 O 정부와 도시간의 관계 관련: 역대 전권회의의 경우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개최도시 또는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유치 목표달성과 비교할 때 부차적인 요소였을 것으로 사료 -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로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지 결정은 중앙정부 주도로 자국의 유치 목적/기대효과 등을 고려하고, 특히 자국의 홍보에 비중을 두고 결정됨 - 이 과정에서, 특히 다른 회원국과 경합이 예상되어 유치에 도움이 될 경우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잘 알려진 휴양지 등을 개최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1. 본 연구보고서(도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2. 본 연구보고서(도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 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